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2010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朱 洛 雲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권 해 수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Private Child-care Centers in Seoul-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朱 洛 雲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권 해 수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Private Child-care Centers in Seoul-

위 論 文 을 社 會 福 祉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朱 洛 雲

朱洛雲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다문화사회의 대두	5
1.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다문화사회의 개념)	5
2. 개인적 측면	7
3. 사회·환경적 측면	11
제 2 절 다문화 가족의 형태와 변동	13
1. 다문화사회의 분류	13
2. 다문화 가족의 형태	15
3. 다문화 가족의 변동추이	15
4. 지역별 다문화아동의 증감	17
제 3 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보육정책	20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20
2.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운용현황	21
3.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운용 현황	35
제 4 절 연구분석의 틀	53
1. 선행연구	53
2. 연구분석 틀 설정	56

제 3 장 연구방법	57
제 1 절 연구 설계	57
1. 연구 대상 및 범위	57
2. 연구 도구	58
3. 자료처리 방법	61
제 4 장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분석	62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62
제 2 절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	65
1. 시설이용자	66
2. 시설운영자	72
제 3 절 보육 과정의 측면	80
1. 가정차원	80
2. 어린이집차원	82
제 4 절 종합과 시사점	85
1.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	85
2. 보육 과정의 측면	87
3. 시사점	88
제 5 장 결 론	91
제 1 절 요약 및 논의	91
제 2 절 정책과제	94
참 고 문 헌	98
설문지	100
ABSTRACT	111

【 표 목 차 】

[표 2-1] 결혼이민자의 증감추이	6
[표 2-2]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분류	7
[표 2-3] 다문화가정의 유형	7
[표 2-4]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6
[표 2-5] 외국인주민 규모별 지자체 수	19
[표 2-6] 인구대비 외국인비율 상·하위 지자체	19
[표 2-7]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22
[표 2-8] 보육영유아 현황(2008.12)	22
[표 2-9] 0~5세 영유아의 기관이용 현황	23
[표 2-10]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23
[표 2-11] 서울시 보육현황(2008.12)	24
[표 2-12] 연도별 보육예산	25
[표 2-13] 연도별 보육지원아동 비율	25
[표 2-14] 보육예산지원에서 국고 및 지방비 비중(2009)	26
[표 2-15] 지방비 예산액 및 보육예산 비중(2006-2009)	27
[표 2-16] 중앙정부 보육사업 내역(2009)	28
[표 2-17] 정부지원시설 지원단가(2009.7월부터)	29
[표 2-18] 정부미지원시설 지원단가(2009.7월부터)	30
[표 2-19] 지표로 본 달라지는 보육	33
[표 2-2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보육료 전액지원 확대계획	34
[표 2-21] 아이사랑플랜 소요예산	34
[표 2-22] 서울특별시 예산액 및 보육예산 비중(2006~2009)	36
[표 2-23] 서울특별시 보육예산 내역(2009)	36
[표 2-24]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2009)	37
[표 2-25]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특수시책 예산(2009)	38
[표 2-26]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인건비 지원 현황(2009)	39

[표 2-27]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2009)	42
[표 2-28]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2009)	46
[표 2-29]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기타 특수시책 지원 현황(2009)	47
[표 2-30]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기준	50
[표 2-31]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	52
[표 3-1] 시설운영자용 코딩 코드	58
[표 3-2] 학부모용 코딩 코드	59
[표 3-3] 설문조사 분석틀	60
[표 4-1] 자녀수	62
[표 4-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62
[표 4-3] 학부모 연령 분포	63
[표 4-4] 학부모 출신국	63
[표 4-5] 학부모 학력	64
[표 4-6] 교사의 성별 분포 및 직위	64
[표 4-7] 교사의 연령별 및 교직경력별 분포	65
[표 4-8] 월평균소득, 보육비용의 가계 부담정도	66
[표 4-9]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노출에 관한 학부모 의견	67
[표 4-10] 학부모가 경험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68
[표 4-11] 외국인 부모의 친한 친구유무 및 고민상담 대상	69
[표 4-12] 자녀교육 정보의 필요성 및 습득방법	70
[표 4-13]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71
[표 4-14] 교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73
[표 4-15]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시간과 교사연수의 도움 정도	74
[표 4-16]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경험 및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도 경험	75
[표 4-17]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태도	75
[표 4-18]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76
[표 4-19] 다문화교육을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77
[표 4-20] 다문화교육 연수 시 알고 싶은 사항	78
[표 4-21]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78

[표 4-22] 어린이집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정도	79
[표 4-23] 교사가 보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자녀생활 관심도	79
[표 4-24] 가정에서의 보육지원	81
[표 4-25]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상의정도 및 의사결정자	81
[표 4-26]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정보교류	82
[표 4-27]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83
[표 4-28] 어린이집에서 외국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유무	84
[표 4-29]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걱정유무 및 걱정하는 이유	85



【 그림 목 차 】

[그림 1-1]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	4
[그림 2-1] 외국인 주민 현황	7
[그림 2-2] 2008년도 대비 국적별 증가현황	8
[그림 2-3] 유형별 국적(외국인 근로자)	8
[그림 2-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분포	10
[그림 2-5] 체류외국인 증가추세	12
[그림 2-6]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	17
[그림 2-7]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18
[그림 2-8]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 분석 모형	56
[그림 5-1] 브론펜브레너의 바이오생태학적 인간발달 모델	92
[그림 5-2]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요 문제	9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우리 사회는 반만년에 걸쳐 내려오는 단일민족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민이 늘기 시작하며 이 땅에서 태어나는 ‘코시안’으로 불리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의 외국인 유입 현상은 세계화 시대에서의 인적 교류의 가속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율 그리고 한국인의 3D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말미암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현재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중에서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가 노동력이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면 한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한 것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듯이, 노동력은 노동의 질인 교육의 정도와 재능숙련도 등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숫자가 많아야 노동력이 커지게 된다. 출산율의 저하는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노동력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노동력이 감소하면 결국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나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출산율이 낮아져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큰 계층으로 상당량의 생산물을 노인들의 부양에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율의

저하는 잠재성장률은 더 내려가게 한다.

신생아 통계를 살펴보면 점차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도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에 관한 관심은 처음에는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등장했고 뒤이어 여성계,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각 시도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각종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연일신문과 방송에서 특별 기획 기사 및 특별 방송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 4월 ‘결혼 이민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6년과 2007년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을,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궁핍, 언어소통의 어려움, 가족갈등, 교육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실행 기구로 출범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¹⁾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합하게 된다. 하지만 동법은 강제성이 미약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2만여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다.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을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보육시설이라고 본다. 한국어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보육환경 또한 중요하며 이에 수반한 한국어와 외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이 더욱 소중하게 이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다름을 똑같이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²⁾ 하는 교육은 아동이 사회와 접촉하게 되는 최초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보육현장에서의 모습을

1) 보건복지가족부 주도하에 설치 운영.

2) 교육인적자원부 표어 인용

살펴보고 이에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고, 민간어린이집의 장점과 개선할 점,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배려여부, 콘텐츠 확보(보육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저출산 위기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실과 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보육시설은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나뉘고 지원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기타 사항에서 자유로운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연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인 0세부터 만5세를 중점으로 하되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15세까지로 하기로 한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발생원인과 형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공공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와 사용자(학부모, 아동)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개념 및 분류, 다문화사회의 발생원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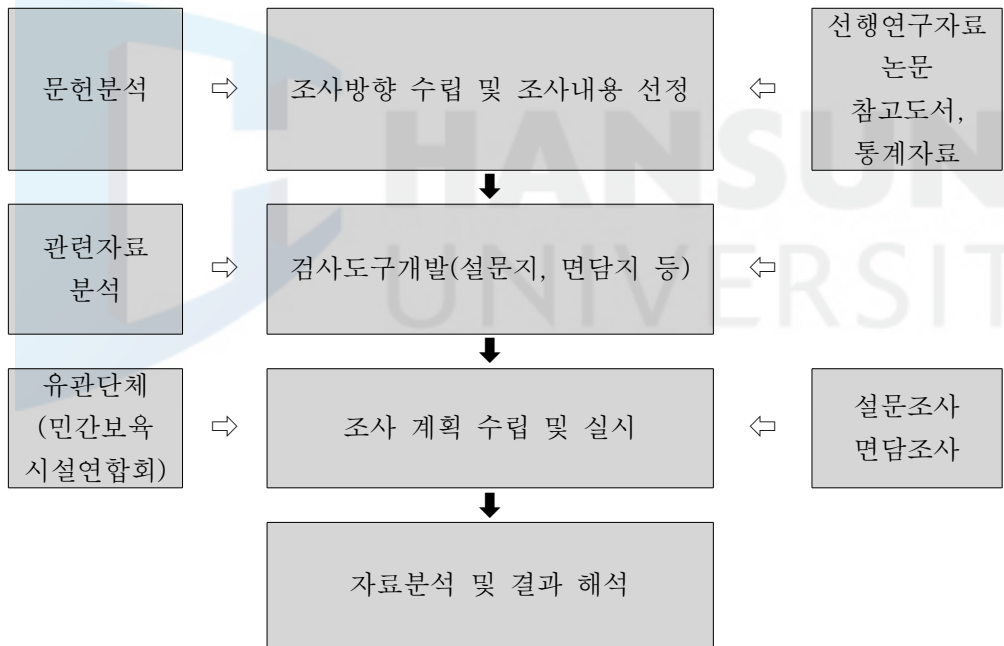
우선 연구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 검토는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선행연구 및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목적에 알맞게 인용하는 문헌적인 조사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석사학

위논문, 다문화 관련 서적과 단행본, 학술단체 연구논문,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정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주민 구성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해 보고 이주민 아동의 보육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현황 및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에서 아동과 학부모, 교사의 학습 및 교육지원 환경을 파악해 보고, 보육 과정의 측면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가정 내 상호관계(부부, 부모-자녀)와 보육시설 내에서의 상호관계(아동간, 교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1-1]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다문화사회의 대두

1.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다문화사회의 개념)

세계화와 지구촌화의 확산으로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유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는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이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3국에 거주하던 재외동포들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UN 국제이주세계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하며 이는 20년 새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제이주가 증가하는 이유로 3D의 차이, 즉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개발격차(Development), 인구분포의 차이(Demography),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의 차이(Democracy)를 들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 이후 선진국의 대열에 들면서 국제 이주민의 증가 현상도 증가현상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2008³⁾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장단기, 미등록 체류자 포함) 1,158,866명으로 백만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12월의 910,149명에서 2007년12월의 1,066,273명으로 17.2%증가한 수치에서 다시 8.7% 증가한 숫자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도 늘어나 2002년 3만4710명에서 2008년 12만2173명으로 6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결혼이민자는 성별로는 여성이 107,436명, 남성이 14,737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계가 가장 많아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계가 가장 많아(362,920+121,754명) 56.75%이며 베트남(79,848명,9.35%) 과 필리핀(39,372명,4.61%) 타이(30,051명,3.52%) 순이다.(출입국·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외국인 통계연보 2008). 통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253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총인구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5%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숫자이며, 결혼이민자는 254,707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결혼의 10.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법무부 뉴스, 2007.8.27).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표 2-1] 결혼이민자⁴⁾의 증감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173
증감률 (전년비,%)	-	37.8	27.9	28.5	31.4	25.0	17.7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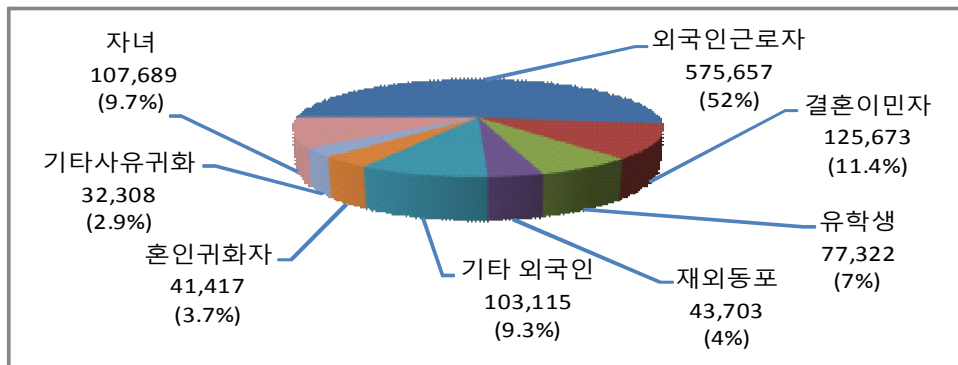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구성이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주가 일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동력 수급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부침과 관련이 있으며 소수자의 인권 혹은 소수 민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도 앞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다(황정미, 2007).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문화 심층적인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다른 인종·민족과의 공존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 이주민과 어떻게 화합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신부를 지칭할 때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①여성 이주노동자, ②여성 결혼이민자, ③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④국제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을 아우르는 복합 개념이므로(설동훈·박경태·이란주(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혼인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주여성’ 혹은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개인적 측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7월에 조사·발표한 ‘2009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5,47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6%에 해당(‘08년 대비 101,368명 증가, 12.3%)에 해당한다.⁵⁾

[그림 2-1] 외국인 주민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2009.7)⁶⁾

외국인근로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에 해당(‘08년도 대비 137,930명 증가, 31.5%)하며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08년도 대비 22,960명 증가, 22.4%)하며 그 외에 전체 외국인주민 중 유학생은 77,322명으로 7%, 재외동포는 43,703명으로 4%, 기타 외국인(상사주재원 등)은 103,115명으로 9.3%에 해당(‘08년 대비 유학생 37.4% 증가, 기타 외국인 39.7%감소). 또한 한국국적 취득자는 73,72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7%에 해당(‘08년도 대비 8,214명 증가, 12.5%)하며 이중 혼인귀화자는 41,41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7%에 해당(‘08년도 대비 255명 감소, △0.6%)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 국가나 중국(재중동포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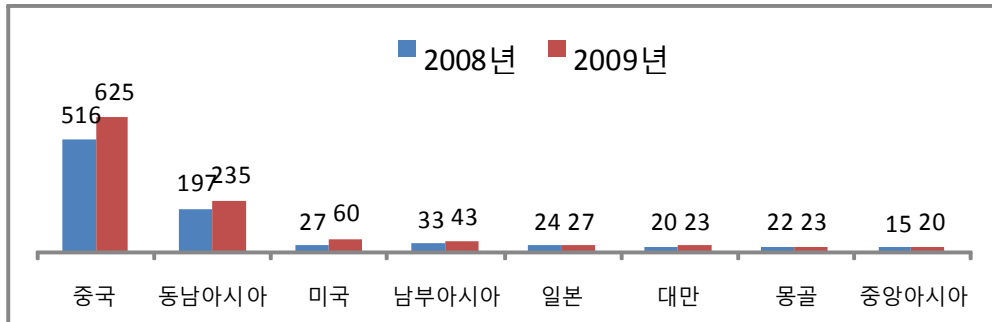
5) ‘08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던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43,703명)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포함

6)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2009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함)이나 몽골의 비율이 높다.

[그림 2-2] 2008년도 대비 국적별 증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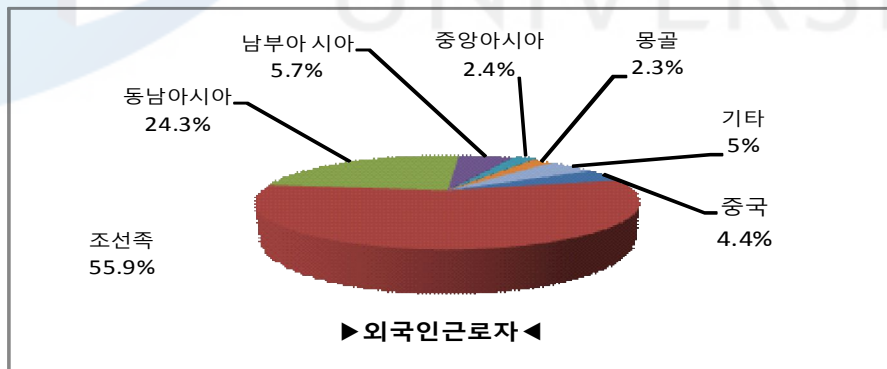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출처 : 행정안전부(2009.7)⁷⁾

중국국적자(조선족 포함)가 624,99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6.5%로 가장 많았다.(중국국적자 중 조선족은 '08년에 비해 65,491명(17.3%) 증가한 443,83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0.1%에 달함)⁸⁾ 다음으로는 동남아 21.2%, 미국 5.4%, 남부아시아 3.9%, 일본 2.4%, 대만·몽골 2.1%, 중앙아 1.8% 순으로 '08년 대비 미국은 대폭 증가(119%)하였으며, 중앙아 33.4%, 남부아시아 31.7%, 중국 21.2%, 동남아 19.1% 증가하였다.

[그림 2-3] 유형별 국적(외국인 근로자)



출처 : 행정안전부(2009.7)⁹⁾

7)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2009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8) 조선족은 국적 미취득자의 41.4%, 국적 취득자의 57.6%를 차지

총 외국인근로자(575,657명) 중에서 중국(조선족) 60.3%(55.9%), 동남아 24.3%, 남부아시아 5.7%, 중앙아 2.4%, 몽골 2.3% 순으로 중국(조선족)과 동남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1%(386,204명)로 다수이나, 중국(조선족)의 경우 여성이 44.1%(152,948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생산직 노동자로서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대부분이 영세한 환경의 근무조건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불법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 폭행, 인신구금, 단속과 추방 등 삶의 존재 조건 자체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반해하는 시민단체들과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이민현상은 (a)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연관된 대량실업과 빈곤화에 따른 이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b)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폐쇄적이고 선별주의적인 이민정책, 그리고 (c)이러한 모순의 산물인 불법이민의 일상화와 같은 세계화 시대 이민의 특징으로 설명된다(엄한진, 2007).

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들어온 전형적인 세계화 흐름에 의한 이주민들로 한국의 정책적 차별과 사회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자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은 국적에서의 차별을 겪게 된다. 또한 아이들은 외모로 인한 차별, 언어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심각한 교육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설동훈, 2005).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18세 이하의 아동은 기본적으로 교육권과 발달에 관련한 제반 조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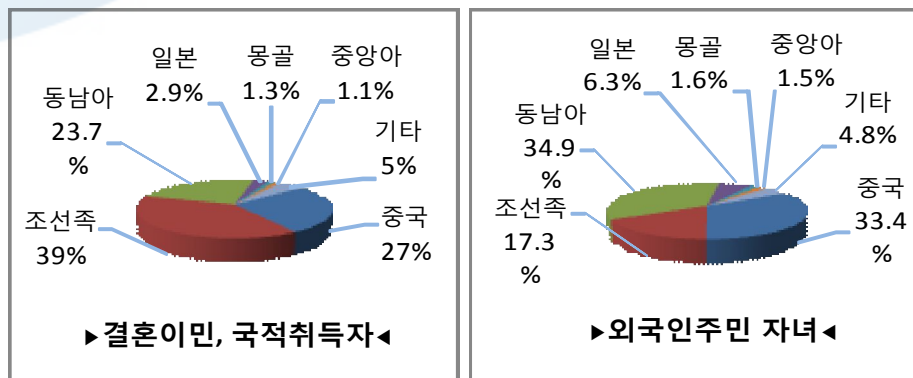
9)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2009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하지만 불법으로 낙인찍힌 부모의 자녀인 경우 기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받게 되고 의료보험도 보장받지 못해 건강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회나 교육의 질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외당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적 기회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개인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고국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이주해 온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생태학적 변화는 국제결혼자의 급증을 낳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결혼적령기의 남녀 인구 격차라는 사회 구성적 요인과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여성 수의 증가 등으로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여성의 만혼화 경향과 결혼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결혼난이 심각해지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국제중매결혼을 지원하여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간의 혼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당시 국제결혼여성 중 41%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 혼인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맞물려 1980년대 이후, 한국 농촌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 남성들의 결혼난이 국제결혼 증가의 주원인이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소위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등장하였고, 한국 여성들이 농촌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해결책으로 가난한 주변국 여성들과 중매결혼을 시키는 국제결혼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그림 2-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분포



출처 : 행정안전부(2009.7)

국제결혼여성들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32.1%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이고, 54.8%가 중국(조선족)여성이며 일본, 몽골, 등 기타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13%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09).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인 문화권에 중매의 형태로 들어온 국제결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더불어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류에서 본 드라마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토에서 이들은 피부색의 차이로 인한 인간적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결혼가정에도 자녀가 출생하는데 이들 가정 아이들 역시 외모상의 차이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2005). 즉,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책임지는 문화풍토인 한국에서 어머니의 낮은 한국어 구사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하고 이것은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외모상의 차이는 차별로 이어져 따돌림을 경험하며 특히 별명으로 외모상의 차이가 조롱대상이 된다. 한국인 아버지를 가진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의 차이가 이들을 차별 대상으로 만드는 단일문화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제결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곧 사회적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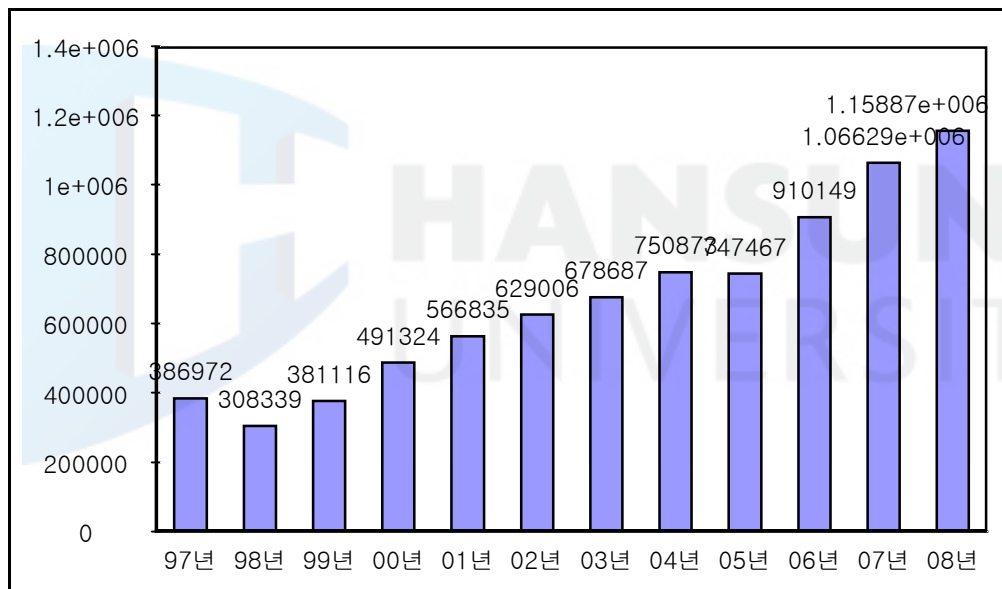
3. 사회·환경적 측면

본래 한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입장이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만주와 하와이 등지를 떠돌며 유랑생활과 정착생활을 하였다. 특히 1937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상당수가 일본으로 강제연행당한 결과 현재까지도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 등으로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의 수는 수백만에 이른다. 이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 이주를 감행하여 현재 전 세계에 한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이민자 수용정책은 해방 후 급격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빠른 성장에 맞춰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허용했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점은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산업구조의 변화로 저임금 생산직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공업화 초기 만해도 농촌에 살던 젊은 노동력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공장을 찾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대학진학을 상승과 함께 공장 등 소위 3D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안책으로 정부는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입과 관련된 ‘산업연수생’제도를 1991년부터 도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개선을 거쳐 2003년 외국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2-5] 체류외국인 증가추세



출처 : 법무부(2009.9), 행정안전부(2009.8) 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법적제도를 마련해 가면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기 시작한지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1,158,866명)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은 전체 인구의 약 1.8%로, 2007년(1,066,291명)에 대비하여 8.7%증가하였다(법무부, 외국인체류인원 및 외국인범죄발생추이, 2009).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중에는 유학생들 및 기타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71.8%)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다문화 가족의 형태와 변동

1. 다문화사회의 분류

역사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자는 화교를 필두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 등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조영달, 2006)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표 2-2]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분류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태어난 아이

박효섭(2006)과 서혁(2007)은 세 가지로 분류된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가족구성원별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황범주, 2006).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다문화가정의 유형

국제결혼가정	①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②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①맞벌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이주한 경우 ②본국에서 남편과 사별·이혼 한 후 여자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다가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 또는 부부가 자녀와 한국에 왔다가 어느 한 쪽이 본국에 돌아가고 다른 한 쪽이 자녀를 데리고 남아 있는 경우 ③자녀와 함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경우 ④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가정
새터민 가정	①탈북자 출신으로 중국이나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와 함께 입국한 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신고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 ②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입국한 후 한국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③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교육부(2006)¹⁰⁾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아동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한국인 혈통의 자녀를 코시안(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스티그마(stigma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르게 된다. 국적법 개정으로 제2조 제1항¹¹⁾에 따라 부계 이든 모계이든 한국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이 아이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권 등 기회의 측면에서 차별 없이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양한 기회의 차별을 경험하며, 그 결과 그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

10) 교육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11)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으로 보고되고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형태

다문화 가족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생겨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의 이주민 가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서구의 경우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이주민 집단 정착촌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민속문화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대부분은 개별 이주의 형태로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단기 거주가 아닌 한국인 가족으로 융합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더불어 생활하는 문제가 크게 부가된다.

3. 다문화 가족의 변동추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이후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어난 것이 그 시작이며, 그 이후 1980년대 말 시작된 한국 농촌 남성들과 중국의 재중동포(조선족)와의 결혼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재중동포와의 결혼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증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중국 어느 일방 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국제결혼의 61.6%(조선족 40.2%, 한족 21.4%)가 중국계통의 여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2005년 사이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표 참조>, 1990년도에 4,710건(1.2%)이던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에는 11,605건(3.7%)으로 10년 새에 3배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42,356(13.6%)으로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204건으로 3.6% 감소 (07년 27,560건 - '08년 26,024건)하였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05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으나, '06년과 '07년의 경우 총 혼인건수 증가 추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감소한 반면 '08년에는 총 혼인건수와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혼인 증감률(-4.6%)에 비해 감소폭이(-3.6%) 적었고 특히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증감률은 -1.5%에 불과하며,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는 증가('07 8.3% - '08년 8.6%)하였다.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 증감률은 -10.5%이며, 구성비는 약간 감소('07년 10.9% - '08년 8.6%)하였다.

[표 2-4]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계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2,090	11,605(3.7)	6,945(2.2)	4,666(1.5)
2001	318,407	14,523(4.6)	9,684(3.0)	4,839(1.6)
2002	304,877	15,202(5.0)	10,698(3.5)	4,504(1.5)
2003	302,503	24,776(8.4)	18,751(6.3)	6,025(2.1)
2004	308,598	34,640(11.4)	25,105(8.2)	9,535(3.2)
2005	314,304	42,356(13.5)	30,719(9.8)	11,637(3.7)
2006	330,634	38,759(11.7)	29,665(9.0)	9,094(2.7)
2007	343,559	37,560(10.9)	28,580(8.3)	8,980(2.6)
2008	327,715	36,204(11.0)	28,163(8.6)	8,041(2.4)

출처: 통계청(인구동태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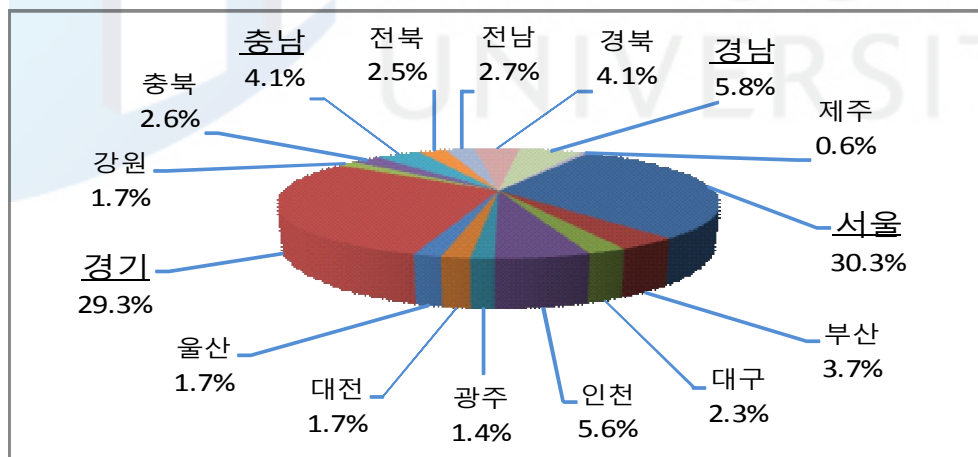
註 : 우리나라 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건수는 국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과소 집계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의 결혼 건수가 국제결의 증가에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외국여성과의 결혼’에서 오는 문제와 다양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함께 가지고 오는 다양한 외국 문화 특히 외국의 가족문화와 한국 가족문화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가족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지속적인 통합적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지역별 다문화아동의 증감

우리나라에서 전체 외국인주민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1%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334,910명, 30.3%)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체, 공단, 대학 등이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 29.3%(323,964명), 경남 5.8%(64,298명), 인천 5.6%(61,522명))

[그림 2-6]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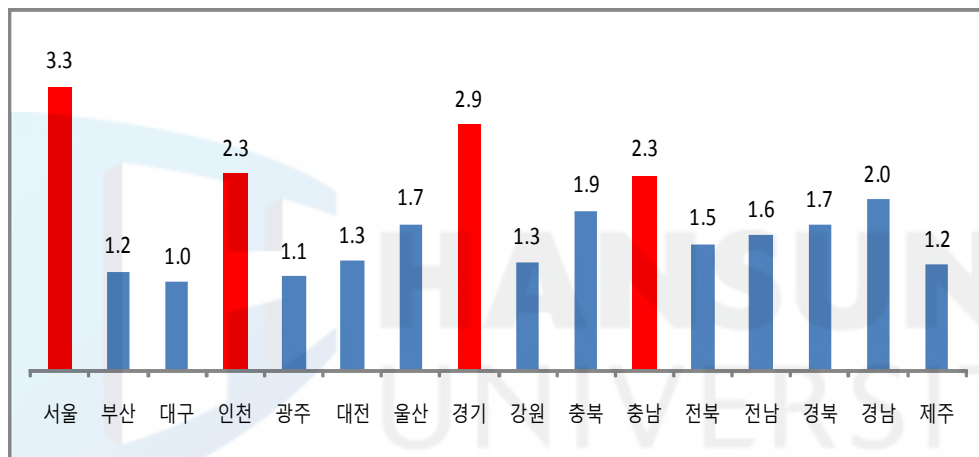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09.7)

외국인근로자는 경기 35.7%(205,239명), 서울 29.6%(170,385명), 경남 6.6%(38,034명), 인천 5.7%(32,758명), 충남 3.6%(22,076명) 순이며 수도권에 집중(70.9%)되어 있고 '08년 대비 서울(57%)과 충남(93%) 지역 대폭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서울 28.7%(57,281명), 경기 27.1%(53,998명), 인천 6%(11,872명), 경남 5.1%(10,107명), 충남 4.3%(8,614명)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61.8%로 비중이 높았다.

시군구별 분포를 보면 평균 4,766명 거주('08년 대비 924명 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 2,471명,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859명, 외국인주민 자녀 458명, 유학생 등 기타 978명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출처 : 행정안전부(2009.7)

외국인이 2만 명 이상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서울 (4곳 : 영등포(44,677명), 구로(34,480명), 금천(22,534명), 관악(22,201명)), 경기 (4곳 : 안산(41,785명), 수원(30,139명), 화성(24,925명), 성남(22,604명))이 있었으며, 5백명 미만 소수 거주 지역으로는 인천 옹진(177명), 강원 화천(340명), 충남 계룡(263명), 전북 무주(379명), 전남 구례(358명), 경북 청송(299명), 영양(214명), 울릉(75명) 등의 순이었다.

[표 2-5] 외국인주민 규모별 지자체 수

외국인주민	계	200백명 이상	200~ 100백명	100~ 50백명	50~ 10백명	10~ 5백명	5~ 1백명	1백명 미만
지자체	232	8(+3)	24(+7)	34+(2)	102(+2)	47(+9)	16(△23)	1(-)

※ 제주도 2개 행정시 포함, ()는 '08년 대비 증감 내역

우리나라의 '09. 5. 1 현재 전체 주민등록인구 49,593,665명 대비 외국인주민은 1,106,884명으로 2.2%에 해당하며('08년 1.8%, '07년 1.5%, '06년 1.1%) 지역별로는 서울 3.3%, 경기 2.9%, 인천 2.3%, 충남 2.3% 순으로 4개 시도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인구대비 5% 이상 지자체는 15곳으로 '08년 대비 4곳이 증가하였으며, 인구대비 0.7% 미만 지자체는 전체 9곳으로 '08년 대비 16곳이 감소하였다.

[표 2-6] 인구대비 외국인비율 상·하위 지자체

5%이상 지자체		증감(%)	0.7%미만 지자체		증감(%)
서울 (6곳)	영등포	11	부산 (3곳)	북구	0.69
	금천	9.1		연제	0.55
	구로	8.2		동래	0.5
	중구	8.0		남구	0.69
	용산	7.0	대구 (3곳)	동구	0.66
	종로	6.5		수성	0.52
경기 (4곳)	포천	6.4		남구	0.69
	안산	5.9		서구	0.58
	김포	5.7	광주 (2곳)	계룡	0.62
	화성	5.3			
인천(1곳)	중구	5.1	충남		
충북 (2곳)	음성	5.9			
	진천	5.4			
전남	영암	8.4			

제 3 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보육정책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에는 42,356건으로(총 결혼건수의 13.5%) 국민 8쌍 중 1건이 국제결혼이었으며, 2008년 36,204건으로 총 결혼 건수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에 문화적 다양성이란 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 유입에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건전한 요인으로 인한 지위적·경제적 취약함과 한국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가부장적인 가족부의 특징으로 인해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사회에 도움을 주기보다 복지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변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가족복지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가족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복지서비스보다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서비스로, 예로써 체류자격의 안정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전승 서비스, 그리고 언어적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자녀교육을 도울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며, 특히 보육부분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다문화적 배경으로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다문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단계로 입안되었다(설동훈·이혜경·조정남, 2007). 첫 번째 단계로는 2005년 8월 16일 체류불안으로 인한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억압을 예방하기 위한 안정적 체류지운,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 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했

다. 9월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영주권 취득기준과 취업 자격을 완화했다. 두 번째 단계는 결혼 이민자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선이었다. 2005년 11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단계는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3단계 정책체계의 구축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7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¹²⁾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여, 2006년에는 전국 21개소를 개소하고, 2007년에는 17개를 증설, 2008년에는 80개소로 배이상 증대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 8개 시·도 및 관내 시·군·구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주여성센터 등 민간단체 300여개소에서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적·법적장치로는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며 동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운용현황

가. 보육영유아 및 보육시설 현황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초기에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관리되었던 것이 대상이 보편화되어 모든 일반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 및 사회가 바람직한 영유아 양육 보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 취원아의 보육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 21.5%에서 2003년도 23.9%, 2005년도 29.8%, 2007년도 38.2%, 2008년도에는 41.4%로

12)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명칭 변경,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함.

높아지고 있다.

[표 2-7]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 영유아수	보육영유아 수	보육율
2002	3,720,013	800,991	21.5
2003	3,598,194	858,345	23.9
2004	3,497,255	891,028	25.5
2005	3,158,538	941,388	29.8
2006	3,011,800	1,040,361	32.9
2007	2,880,788	1,099,933	38.2
2008	2,744,597	1,135,502	41.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보육영유아는 2008년 12월 현재 총 1,135,502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123,405명(10.9%), 법인 113,894명(10.0%), 민간개인 669,465(59.0%), 가정보육 210,438명(18.5%), 직장보육 16,809명(1.5%)이다.

[표 2-8] 보육영유아 현황(2008.12)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영유 아수	1,135,502 (100.0)	123,405 (10.9)	113,894 (10.0)	669,465 (59.0)	53,818 (4.7)	615,647 (54.3)	1,491 (0.1)	210,438 (18.5)	16,809 (1.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2008. 12월 현재).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취원아까지를 포함한다면 0~5세 전체로는 기관 이용률이 59.7%이고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아 37.7%, 유아 80.3%이다. 연령별로는 0세아 기관 이용률이 22.2%로 가장 낮고 5세아가 87.7%로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특히 기존에 보육 이용률이 낮았던 영아보육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세 영아보육은 2006년도 총 인구수 대비 보육율이 11.6%이었으나 2007년도 26.2%, 2008년도 37.7%로 높아지고 있다.

[표 2-9] 0~5세 영유아의 기관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수(A)1)	시설이용영유아(B)			시설 미이용 영유아(A·B)
		어린이집2)	유치원3)	소계	
0세	446,738(100.0)	99,245(22.2)	·	99,245(22.2)	347,493(77.8)
1세	445,796(100.0)	160,320(36.0)	·	160,320(36.0)	285,476(64.0)
2세	438,576(100.0)	242,324(55.3)	·	242,324(55.3)	196,252(44.7)
소계(영아)	1,331,110(100.0)	501,889(37.7)		501,889(37.7)	829,221(62.3)
3세	448,625(100.0)	229,424(51.1)	99,499(22.2)	328,923(73.3)	119,702(26.7)
4세	475,449(100.0)	192,668(40.5)	184,178(38.7)	376,846(79.2)	98,603(20.8)
5세	489,413(100.0)	175,323(35.8)	254,145(51.9)	429,468(87.7)	59,945(12.3)
소계(유아)	1,413,487(100.0)	597,415(42.3)	537,822(38.0)	1,135,237(80.3)	278,250(19.7)
계	2,744,597(100.0)	1,099,304(40.1)	537,822(19.6)	1,637,126(59.7)	1,107,471(40.3)

자료: 1) 통계청·KOSIS.(2008). 연령별추계인구.

2)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2008. 12월 현재).

3) 교육인적자원부(2009). 2008 교육통계.

2008년 12월 현재 총 보육시설 수는 33,499개소로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5.5%(1,826개소)이며 법인보육시설은 4.4%(1,458개소)이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은 42.6%(14,275개소)이다.

[표 2-10]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보육	직장
				소계	법인의외	민간개인			
2003	24,142 (100.0)	1,329 (5.5)	1,632 (6.8)	13,644 (56.5)	787 (3.3)	11,225 (46.5)	미분 류	8,933 (37.0)	236 (1.0)
2004	26,903 (100.0)	1,349 (5.0)	1,537 (5.7)	14,728 (54.7)	966 (3.6)	12,225 (45.4)	미분 류	10,583 (39.4)	243 (0.9)
2005	28,367 (100.0)	1,473 (5.2)	1,495 (5.3)	13,748 (48.5)	979 (3.5)	12,769 (45.0)	42 (0.1)	11,346 (40.0)	263 (0.9)
2006	29,233 (100.0)	1,643 (5.6)	1,475 (5.0)	13,930 (47.6)	1,066 (3.6)	12,864 (44.0)	59 (0.2)	11,828 (40.5)	298 (1.0)
2007	30,856 (100.0)	1,748 (5.7)	1,460 (4.7)	14,083 (45.6)	1,002 (3.2)	13,081 (42.4)	61 (0.2)	13,184 (42.7)	320 (1.0)
2008	33,499 (100.0)	1,826 (5.5)	1,458 (4.4)	14,275 (42.6)	969 (2.9)	13,306 (39.7)	65 (0.2)	15,525 (46.3)	350 (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서울특별시에는 보육시설 5,600개소에서 190,310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2-11] 서울시 보육 현황(2008. 12)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영유아 수	190,310 (100.0)	48,177 (25.3)	2,001 (1.1)	104,661 (55.0)	9,594 (5.0)	95,067 (50.0)	432 (2.4)	30,528 (16.0)	4,511 (0.2)
시설수	5,600 (100.0)	618 (11.0)	32 (0.6)	2,551 (45.6)	227 (4.1)	2,324 (41.5)	17 (0.3)	2,291 (40.9)	91 (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나. 보육예산 운용 현황

중앙정부는 보육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정책 수행의 골격이 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의 수행과, 지방정부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 지원예산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정책 참여는 보육예산의 증가로 실현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4,411억원이었던 예산은 2003년도에는 8,261억원으로 전년대비 87.3%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는 10,619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2005년도에는 1조 6,050억원으로 전년대비 51.1%, 2006년도에는 2조 408억원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하였다. 2007년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조 6,835억원으로 전년대비 31.5%, 2008년도 예산은 3조 3,667억원으로 전년대비 25.5%, 2009년도 예산은 3조 5,738억원이다.

[표 2-12] 연도별 보육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계
2003	3,120	5,141	8,261
2004	4,050	6,569	10,619
2005	6,004	10,046	16,050
2006	7,913	12,495	20,408
2007	10,384	16,451	26,835
2008	14,117	19,550	33,667
2009	16,959	18,782	35,738

자료: 기획예산처(2007). 내부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보육료를 지원받는 지원아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2002년도에는 총 취원아의 21.0%가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24.5%, 2004년도 30.1%, 2005년도 54.2%, 2006년도 65.4%, 2007년도 78.1%, 2008년도에는 보육영유아의 78.5%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2009년 7월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4인가구 기준 151만원)에서 소득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영유아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2-13] 연도별 보육지원아동 비율

단위: 명, %

	현원	보육 지원아동 수	보육료 지원율
2002	800,991	167,831	21.0
2003	858,345	210,613	24.5
2004	930,252	279,882	30.1
2005	989,390	536,049	54.2
2006	1,040,361	680,736	65.4
2007	1,099,933	859,353	78.1
2008	1,135,502	891,723	78.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2) 중앙-지방 분담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된다. 독립적인 법인체이자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율성을 갖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예산활용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원하는 재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예산 역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보육예산에서 국고와 지방비 지원 비율은 다음의 [표 2-13]과 같다. 서울은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0~30%, 지방보조금이 70~90%를 차지한다. 지방 역시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40~60%, 지방보조금이 40~60%를 차지한다.

보육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지방비의 증액이 지역별로 자유로운 사업 기획 및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비의 약 3/4정도가 국고보조금사업의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약 1/4 정도만이 개별 지역에서 기획한 정책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표 2-14] 보육예산지원에서 국고 및 지방비 비중(2009)

사업명	서울		지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인건비 : 종사자인건비(국공립,법인,영아전담시설,장애아전담시설,방과후시설보육교사,시간연장형시설보육교사)	10%	90%	40%	60%
	20%	80%	50%	50%
운영비 :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30%	70%	60%	40%
인프라 :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시설비 :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50%	50%	50%	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육사업안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예산은 2006년 1조 2,495억원, 2007년 1조 6,451억원 2008년 1조 9,550억원, 2009년 1조 8,78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9년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낮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은 78.8%에 이르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담률은 40%에서 50%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금을 제외한 예산이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이다.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액은 전체 보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특수시책 예산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광주광역시 경우 33억 4,300만원(2009년)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1,154억 8,681만원이다. 그러나 예산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경우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정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15] 지방비 예산액 및 보육예산 비중(2006-2009년)

단위: 천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서울	361,587,379	86.6	434,368,868	85.2	513,922,415	83.2	428,240,715	78.8
부산	60,504,777	52.5	80,329,683	52.2	77,861,757	41.5	80,502,687	40.7
대구	51,624,114	51.2	66,185,687	51.7	68,582,967	43.2	72,857,704	41.3
인천	47,450,187	58.3	60,937,432	57.6	64,805,648	47.5	59,955,812	41.1
광주	44,416,271	50.3	55,622,205	50.4	47,993,468	40.5	49,805,394	40.1
대전	31,120,540	57.3	41,822,695	55.9	49,695,002	49.7	39,947,825	41.9
울산	20,860,630	54.8	27,628,681	56.1	32,231,222	51.2	29,500,266	46.2
경기	226,806,543	60.1	309,521,295	59.8	406,029,279	58.3	351,775,255	50.8
강원	37,767,715	52.4	48,583,029	53.0	62,221,496	53.2	70,507,250	50.0
충북	45,015,161	55.4	59,363,519	56.0	69,613,998	53.8	74,599,193	50.0
충남	46,562,957	53.1	61,267,374	53.2	84,411,733	55.5	85,443,664	50.0
전북	62,975,247	52.8	84,469,919	54.1	103,080,153	54.3	115,261,487	50.0
전남	62,404,397	52.9	106,748,854	59.6	86,257,555	50.8	113,554,799	50.0
경북	50,470,194	51.5	73,795,817	53.6	93,231,202	53.3	111,312,159	50.0
경남	71,630,251	54.0	100,025,577	53.9	129,348,241	54.4	146,102,659	50.0
제주	29,939,099	55.8	34,540,297	55.0	44,479,999	54.8	48,090,236	50.0

자료: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3) 지원내역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준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집행을 지방정부의 역할로 정의하기도 하며, 지자체 내의 수요와 정책목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수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인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보육인프라 구축지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시설미이용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표 2-16] 중앙정부 보육사업 내역(2009)

정책	대상	기준	지원금
보 육 지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별 영유아연령별 보육료 지원 은 50%이하 전액지원, 60% 60%, 70% 30%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및 내부자료.

우선 인건비지원사업인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으로는 국공립, 법인 보육 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사업이 있다. 시설장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30%를 지원한다.

[표 2-17] 정부지원시설 지원단가(2009. 7월부터)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 이하	100%	만 0 세	383,000
		만 1 세	337,000
		만 2 세	278,000
		만 3 세	191,000
		만 4 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 0 세	229,800
		만 1 세	202,200
		만 2 세	166,800
		만 3 세	114,600
		만 4 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 0 세	114,900
		만 1 세	101,100
		만 2 세	83,400
		만 3 세	57,300
		만 4 세	51,600

註: 방과후보육 지원금액은 만4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임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에 따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지원된다. 차등보육료는 기존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5계층에 따라 보육료의 30~100%가 정률로 지원되었으나 2009년도7월부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다. 보육료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조회 포함)없이 보육료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가 기준이 된다.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비율은 소득하위 50%이하(가구원 4인기준 258만원)는 정부지원 보육료단가의 100%지원, 소득하위 60%이하(가구원 4인기준 339만원)는 60%지원, 소득하위 70%이하(가구원 4인기준 436만원)는 보육료의 30%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정부인건비지원 시설 및 직장보육시설과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운용된다.

[표 2-18] 정부미지원시설 지원단가(2009. 7월부터)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464,900
		만1세	270,100
		만2세	195,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하위 50%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아가 대상이며, 만4세 이상 보육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하위 50%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영유아에게 소득하위 70%까지 20 ~ 50%를 지원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만0세~만12세 취학전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단가는 정부인건비지원시설 이용 영유아는 월 383,000원, 정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는 월 733,000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12세 이하 취학 영유아가 대상이며 만4세아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는 만1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을 포함하며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영유아는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지원한다.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이 이외에도 해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의 원칙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인간지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한다. 원장의 인건비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방과후반 교사는 2004년 이전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특수보육과 관련해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별도 교사를 두는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민간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24시간 보육에 대해서는 24시간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민간지정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사업, 환경개선 사업,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시설확충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이 있다. 그 이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등이 지원되고 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의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등이 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교재 교구비 지원은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이 대상이고 지원기준은 현원을 기준으로 연간 500천원에서 1,200천원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과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연간 2,400천원(월 20만원)을 지원한다. 2009년도부터 시설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수당이 지급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영유아 중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영유아에 대하여 2009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중앙보육위원회 및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재교육 등의 업무, 그리고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9년도부터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취사부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다. 주요보육정책 : 아이사랑플랜¹³⁾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부모, 어린이집, 정부가 함께 하는 미래투자전략의 개념으로 수립한 보육정책이다. 동 아이사랑플랜에서는 변화된 보육정책의 환경, 그리고 그간 수행되어왔던 보육정책의 성과를 살펴본 후 ‘우리가 꿈꾸는 보육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부모의 자녀양육

13) 2009년 4월 2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음.

비용부담 경감, 둘째, 영유아·부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집근처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원, 넷째, 보육교사들의 자긍심 증진, 다섯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 여섯째, 보육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9] 지표로 본 달라지는 보육

분야	지표명	2009년	2012년
보육비용 부담 완화	· 보육료 전액지원 지원 영유아 비율	소득하위50% (59만명)	소득하위80% (93만명)
	·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비율	차상위 (11만명)	소득하위80% (59만명)
수요자 맞춤형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개소 수	4,110	4,500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62%	70%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40%	90%
	·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	135개소
보육인력 전문성강화	·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농어촌 21천명	중소도시 111천명
	· 대체교사 지원인력	450명	1,500명
보육전달체계 효율화	· 보육지원대상자 선정 소요기간	1개월 이내	2주 내외
	·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전면실시	안정적 정착
보육사업 지원체계구축	·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	공공인프라 마련	민관학 연계망 활성화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이중 ‘우리가 꿈꾸는 보육의 모습’과 2012년까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보육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의 목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을 3대 전략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및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표 2-2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계층	소득 하위 50%	소득 하위 60%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소득 하위80% 이하
소요예산 (보육료 전체 예산)	12,821	16,351	17,977	19,139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된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지원으로 부모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와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정책 연구 강화, 지원기구 개편, 부모참여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21] 아이사랑플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9	'10	'11	'12
합계	11,868,407	1,706,659	2,730,661	3,402,772	4,028,315
① 양육비용 부담경감	9,390,635	1,314,558	2,124,995	2,696,589	3,254,493
○보육료 지원 확대	7,636,107	1,282,168	1,759,353	2,124,058	2,470,528
○양육수당 지원	1,754,528	32,390	356,642	572,531	783,965
②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148,438	16,267	39,952	43,374	48,845
○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 강화	34,990	473	10,796	11,466	12,255
○장애보육시설 지원강화	5,860	292	1,856	1,856	1,856
○맞벌이부모 지원	97,866	15,502	24,384	26,649	31,331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9,772	-	2,916	3,403	3,403
③ 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251,572	25,416	74,438	75,175	76,543
○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115,447	7,657	35,930	35,930	35,930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1,046	250	258	265	273
○평가인증 활성화	16,001	3,401	4,100	4,200	4,300
○보육시설 균형배치	119,078	14,108	34,150	34,780	36,040
④ 보육교사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2,042,412	341,862	480,820	578,738	640,992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8,196	1,979	2,025	2,072	2,120
○보육교사 처우개선	2,034,216	339,883	478,795	576,666	638,872
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38,810	7,556	8,506	7,306	7,442
⑥ 보육정책의 효과적지원체계 마련	4,540	1,000	1,950	1,590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

3) 보육재정 지원의 방향

아이사랑플랜이 제시하고 있는 보육재정의 지원방향은 부모들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보육료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추진방안으로는 0~4세 보육료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지원은 2009년도 소득하위 50%까지 무상 지원하며 2010년도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까지, 2011년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그리고 2012년도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운용 현황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준하여 매년 수립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여 지원대상 및 내용을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고유 사무는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특수시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에 준하며 서울특별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보육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서울특별시 보육예산의 운용과 25개구별로 수행되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 서울특별시 보육예산 운용 현황

2009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총액은 국고보조금 1조 6,956억원, 순지방비 1조 8,782억원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보육예산은 5,435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153억원, 순 지방비 4,282억원이다. 서울특별시 보육예산은 2006년도 3,616억원, 2007년도 4,344억원, 2008년도 5,139억원, 2009년도 4,282억원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육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보육예산에서 순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8.8%이다.

[표 2-22] 서울특별시 예산액 및 보육예산 비중(2006~2009)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 예산중 비중
서울	361,587,379	86.6	434,368,868	85.2	513,922,415	83.2	428,240,715	78.8

출처: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특수시책(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보육예산 5,435억원의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382억원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1,437억원, 보육료 지원 3,753억원, 보육인프라 구축 7억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49억원, 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지원 136억원이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53억원이다.

[표 2-23] 서울특별시 보육예산 내역(2009)

예산내역	예산액(억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1,437
보육료 지원	3,753
보육인프라 구축	7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49
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지원	136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3
계	5,435

자료: 서울특별시(2009), 2009 보육사업 예산, 내부자료.

나. 서울특별시 지원 사업 내역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가 계획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액 면제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 시설 운영비(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소규모시설 취사부, 0세아 전담간호사,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보육종사자 처우수당, 시간연장·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 방과후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등이다.

중앙정부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한하여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서울특별시는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서울키즈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인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우수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정리하면 [표 2-24]과 같다.

[표 2-24]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2009)

구분	서울특별시 사업(사례)
보육시설 운영지원	- 전액 면제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 - 시설 운영비 지원: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 종사자인건비: 소규모시설 취사부, 0세아 전담간호사, 비상근교사, 대체교사인건비, 보육종사자 처우수당, 시간연장(휴일)보육교사 근무수당, 보육도우미인건비 -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보전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 - 방과후보육시설 운영지원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배상보험 지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보육시설)
보육 인프라 구축	- 보육정보센터 운영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 서울키즈센터 건립
기타	-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운영: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급

출처: 2009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서울특별시). 내부자료.

다. 서울특별시 구별 특수시책 현황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가 있으며, 25개 구에서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비는 1,155억원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52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4억 7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표 2-25]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특수시책 예산(2009)

구 분	예산소요액(천원)	연간 영유아 1인당 투자예산 (천원)
총 계	115,486,818	
서울시	74,476,674	
자치구 계	41,010,144	
종로구	470,030	136,597
중구	515,200	173,176
용산구	874,400	225,071
성동구	2,480,434	404,441
광진구	1,807,652	245,605
동대문구	1,718,767	237,432
중랑구	1,931,658	214,390
성북구	1,318,774	139,671
강북구	1,966,040	252,867
도봉구	1,084,984	135,083
노원구	1,931,700	157,292
은평구	953,823	99,992
서대문구	2,092,960	327,947
마포구	1,489,455	221,810
양천구	1,503,251	160,776
강서구	1,229,520	107,485
구로구	946,800	104,044
금천구	1,529,780	227,510
영등포구	998,600	127,113
동작구	1,943,220	274,311
관악구	2,046,445	221,789
서초구	1,319,600	246,010
강남구	5,289,751	789,279
송파구	1,651,200	173,373
강동구	1,916,100	247,846

구의 보육예산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원 1인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강남구가 789,279원, 성동구 404,441원, 서대문구 327,947원 순으로 높았다. 현원 1인을 기준으로 투입비용이 낮았던 구는 은평구(99,992원), 구로구(104,044원), 강서구(107,485원) 순이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26]과 같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그리고 1회성 행사 등과 같은 기타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구에서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다소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처우개선비, 수당 지원 등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러한 복리후생비 지원은 구에 따라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인가 미지원 시설인가에 따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지원의 내역은 인건비 지원과 수당 지원으로 구분되며, 수당 지원은 최대 월 100,000원에서 최소 30,000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인가 미인증시설인가에 따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평가인증 통과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지원 등이다.

[표 2-26]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인건비 지원 현황(2009)

자치구	정부 인건비지원	정부 인건비미지원
강북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강남구	- 비담임교사인건비: 구립 보육교사인건비80% - 간호사인건비: 구립 간호사인건비 80% - 취사부인건비: 구립 1인당 월35,000원 (2인 이상 채용시) - 구립보육 시설교사 초과근무수당: 1인당 1일 2시간 시간당1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구립 1인당 월 70,000원 - 영양사인건비: 구립 100%(5개시설당 1인)	- 취사부인건비: 민간가정, 현원별차등 지원 월350,000~90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민간가정 직장 1인당 월100,000원 - 비담임교사인건비: 민간가정 1개소당 600,000원 - 교사중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 25,000원
강동구		- 취사부인건비: 민간가정 1인당 월 200,000원 - 처우개선비: 민간가정 1인당 월45,000원
강서구		- 보육시설교사복리후생비: 1인당 월 40,000원
관악구	- 보육시설종사자복리후생비: 1인당 월 50,000원 - 식당운영비(취사부): 구립 40인이하: 월600,000원, 100인이상: 월347,720원	- 보육시설종사자복리후생비: 1인당 월 50,000원 - 식당운영비(취사부): 민간,가정 52인 이하 월200,000원

광진구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월50,000원
구로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50,000원
금천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50,000원
노원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구립 1인당 월 50,000원 - 방과후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1인당 월30,000원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1인당 월50,000원 - 방과후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1인당 월30,000원
도봉구	- 보육시설종사자복리후생비: 1인당 월 2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동대문구		- 보육교사 중식비 : 1인당 70,000원
동작구	- 취사부인건비: 구립 1인당 월200,000원 - 조리사자격증수당지원: 1인당 월 30,000원 -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구립 1인당 월 30,000원 - 종사자연구개발비 : 구립시설장 1인당 연 400,000원, 구립보육교사 1인당 연 200,000원 - 평가인증통과시설종사자 수당: 원장 연600,000원 교사 연200,000~300,000원	- 취사부인건비: 민간 40인이상, 1인당 월300,000원, 40인미만, 1인당 월 250,000원 - 가정 1인당 월200,000원 -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민간,가정 1인당 월 50,000원 - 종사자연구개발비 : 구립시설장 1인당 연 400,000원, 구립보육교사 1인당 연 200,000원 - 조리사자격증수당지원: 1인당 월 30,000원 - 평가인증통과시설종사자 수당지원: 원장 연600,000원 교사 연200,000~300,000원
마포구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민간,가정보육시설 1인당 월70,000원 - 취사부인건비: 민간 1인당 월500,000원
서대문구	- 구립 비담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평가인증시설 1인당 월80,000원, 평가미인증시설 1인당 월50,000원 - 비담임교사 급여: 구립보육시설 1인당 월1,270,000원 - 취사부인건비: 구립 1인당 월250,000원 - 취사부수당: 구립 1인당 월50,000원	- 민간,가정,방과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평가인증시설 1인당 월 80,000원, 평가미인증시설 1인당 월 50,000원 - 취사부인건비: 민간 1인당 월250,000원 (현원81인이상) - 취사부수당: 민간 1인당 월50,000원(현원40인이상)
서초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1인당 월50,000원 -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1인당 월50,000원	- 보육교사중식비:1인당 월50,000원 -보육교사 교재연구비:1인당 월50,000원
성동구	- 보육교사능력향상비: 1인당 1회 10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1인당 월70,000원 -보육교사능력향상비:1인당1회100,000원
성북구	- 보육교사시간외수당: 국공립 1인당 월50,000원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50,000원

송파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구립 평가미인증시설 1인당 월40,000원, 평가인증시설 1인당 월70,000원(채용후 6개월 이후)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평가미인증시설 1인당 월40,000원, 평가인증시설 1인당 월70,000원(채용후 6개월 이후) - 취사부인건비: 민간가정, 종사자 수에 따라 지원액 변동(연 800,000 회지급 수준)
양천구	- 명절휴가비 :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0,000원(연2회)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1인당 월30,000원
영등포구	- 구립 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 1인당 월3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민간, 가정 1인당 월30,000원 - 교사중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 25,000원
용산구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월50,000원 - 시설장직책수당: 1인당 월100,000원 - 시설장보육교사 시간외수당:1인당 월 30,000원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월50,000원 - 보육교사 교통비: 1인당 월30,000원 - 보육교사 중식비: 1인당 월30,000원
은평구		-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민간,가정,방과후 1인당 월30,000원
종로구	-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시설장 1인당 월30,000원, 보육교사 1인당 월30,000원 - 40인미만 구립취사부인건비: 100%	-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민간 월50,000 방과후 월 25,000
중 구	- 교사복리후생비: 1인당 월40,000원	- 교사복리후생비: 1인당 월60,000원 - 취사부인건비: 1인당 월500,000원(개원후 2년이상 전체시설)
중랑구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국공립 1인당 월50,000원	-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민간가정근속수당 1인당 월20,000원

출처: 2009년도 서울특별시 특수시책사업 현황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에서 영유아 급식비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종사자 교육비 지원, 영아반 운영 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유기농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소독방제비 및 실내공기질관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은 구에 따라 그리고 시설 유형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의 내역과 금액에서 다소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구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들에 대하여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종사자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7]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2009)

자치구	정부 인건비지원	정부 인건비미지원
강북구	- 교재교구비: 국공립 40인미만 1개소당 연900,000원 40인이상 1개소당 연1,000,000원 방과후교실 1개소당 연500,000원 - 냉난방비: 40인미만 1개소당 연7회 150,000원 40인이상~80인미만 1개소당 연7회 월300,000원 80인이상 1개소당 연7회 400,000원 - 보육연구비: 1개소당 월30,000원 - 영아간식비: 만0~2세 1인당 1일 1,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 시설운영비 1개소당 연1회 3,000,000원, 종사자지원금 1인당 500,000원	- 냉난방비: 40인미만 1개소당 연7회 150,000원 40인이상~80인미만 1개소당 연7회 월300,000원 80인이상 1개소당 연7회 월400,000원 - 보육연구비: 1개소당, 월30,000원 - 영아간식비: 만0~2세 1인당 월 20,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 시설운영비 1개소당 연1회 3,000,000원, 종사자지원금 1인당 500,000원
강남구	- 시설장및교사연수: 시설장 1인당 연350,000원 교사 1인당 연100,000원 - 복합시설(취약환경)운영: 시설당 연300,000~500,000원 - 초과근무보육교사석식비: 1인당 월1~2회 5,000원 - 유기농식재료: 1인당 월5,000원 - 시간연장및 취약보육 시설운영(운영비,시설장수당, 인건비) - 평가인증 교재교구비: 규모별 차등지원 500,000~3,000,000원	- 영아반지원비: 민간,가정 1개반 월400,000원 2개반 월500,000원 - 복합시설(취약환경)운영: 시설당 연300,000~500,000원 - 방역소독비: 민간,가정,직장, 규모별차등지원 연5회 50,000~215,000원 - 기본장비지원: 민간,가정 1개소당 연1,000,000원 - 시설장및교사연수비: 민간,가정, 시설장 1인당 연300,000원 교사 1인당 연100,000원 - 시간연장및 취약보육 시설운영(운영비,시설장수당,인건비) - 평가인증 교재교구비: 규모별 차등지원 500,000~3,000,000원
강동구	- 보육시설평가인증: 1인당 200,000원	- 영아반운영비:민간,가정 1인당 월15,000원 - 영유아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8,500원 - 냉난방비: 민간 1개소당 연4회 200,000원 가정 1개소당 연4회 100,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 1인당 200,000원
강서구		- 영아간식보조비: 1인당 2세미만 1일 910원, 1인당 2세 1일 450원
관악구	- 식당운영비(취사부): 구립 40인이하: 월600,000원 100인이상: 월347,720원 - 장애인담차량운영비: 월50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교육 - 평가인증참여보육시설환경개선비, 교사격려비 지원: 111,000,000원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지원: 연3,000,000~5,000,000원	- 냉난방비: 민간: 월130,000원, 가정: 월 120,000원 - 식당운영비(취사부): 민간,가정 52인이하 월 20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교육 - 평가인증참여보육시설환경개선비, 교사격려비 지원: 111,000,000원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지원: 연3,000,000~5,000,000원

광진구	- 영아간식비 : 10,000원	- 난방비: 민간,가정 연450,000원 - 영아간식비 : 1인당 7,500원 - 유아간식비: 1인당 월12,500원
구로구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 원 연500,000~1,000,000원 - 냉난방비: 1개소당 연4회 100,000원 - 종사자교육연수: 1인당 연50,000원 - 모범교육시설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300,000~1,000,000원	- 영아간식비:민간,가정 1인당 월10,000원 - 냉난방비: 민간,가정 1개소당 연4회 100,000원 - 모범교육시설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300,000~1,000,000원 - 종사자교육연수:1인당 연50,000원
금천구	- 영아간식비: 국공립 1인당 1일 240원 - 차량운영비: 1개소당 11,200,000원	- 영아간식비: 민간 1인당 1일 480원
노원구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500,000원	- 영유아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1일 910원
도봉구	- 친환경농산물급간식비: 친환경쌀50% - 우유급식비: 1인당 월10회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0,000원 - 법정저소득층 특기비 지원-1인당 월 20,000원	- 친환경농산물급간식비: 친환경쌀50% - 우유급식비: 1인당 월10회 - 교재교구비: 민간,가정,직장 1개소당 연10,00원 - 법정저소득층 특기비 지원-1인당 월 20,000원
동대문구	- 영아간식비: 0~2세 1인당 월15,000원	- 보육교사중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70,000원 - 냉난방비: 민간,가정 난방비 1개소당 연2회 100,000원 - 냉방비 1개소당 연2회 100,000원 - 영아간식비: 0~2세 1인당 월15,000원
동작구	- 영아간식비: 만2세이하 1인당 1일 600원 - 친환경쌀구입비: 구립 1개소당 포당25,000원 -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 1개반당 연1회 2,280,000원	- 연료비: 민간 60인이상 1개소당 연1,000,000원 - 40인이상~59인 1개소당 연700,000원 - 21인이상~39인이하 1개소당 연500,000원 - 가정 1개소당 연300,000원 - 영아간식비: 만2세이하, 1인당 1일 600원 -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 1개반당 연1회 2,280,000원
마포구	- 보육교사대체인력인건비:1인당 일5회 50,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금: 1개소당 연1회 1,500,000원	- 영아간식비: 민간가정0~2세 1인당 1일 910원 - 냉난방비: 민간가정 연4회 133,561원 - 보육교사대체인력인건비:1인당 일5회 50,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금:

서대문구	- 교재교구비: 구립,정부지원,구립방과후 1개소당 연1회 1,000,000원 - 냉난방비: 현원별 연6회 100,000원~200,000원 - 영유아간식비: 1인당 월10,000원 -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1개소당 연250,000원 - 평가인증통과시설지원: 인증후정원별 연1회 1,000,000~2,000,000원 - 시간연장및장애아통합시설비상근교사지원: 1인당 1일 17,200원	- 교재교구비: 연1회 20인이하 900,000원, 40인미만 1,000,000원, 40인이상 1,200,000원 - 냉난방비:현원별 연6회 20인미만 100,000원, 40인미만 150,000원 40인이상 200,000원 - 영유아간식비: 1인당 월10,000원 - 평가인증통과시설지원: 인증후정원별 연1회 1,000,000~2,000,000원 - 시간연장및장애아통합시설비상근교사지원: 인건비(1인지원) : 100만원(국비) 1인 시간당 5,000원(시비)
서초구	- 교재교구비: 61인이상 연1,200,000원 40~60인이하 연1,000,000원 21~39인이하 연900,000원 - 시간연장지정 시설운영비: 1개소당 월200,000원 - 평가인증참여·통과 시설격려: 지급월의 현원기준으로 차등지원 1개소당 300,000~1,700,000원	- 영아반운영비 추가지원: 민간,가정,부모협동 1인당 월10,000원 - 2,3세반운영비 추가지원: 가정,부모협동, 50인이하 민간 1개소당 월200,000원(2세반 가정, 3세반 민간) - 시간연장지정 시설운영비: 1개소당 월200,000원 - 평가인증참여·통과 시설격려: 지급월의 현원기준으로 차등지원 1개소당 300,000~1,700,000원
성동구	- 유기농 급·간식비: 1인당 월 10,000원(유아에 한함)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센티브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회 500,000원	- 유기농 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1일 500원 - 영유아 간식비: 1인당 1일 750원 - 냉난방비: 1개소당 월5회 150,000원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센티브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회 500,000원
성북구	- 영아간식비: 1인당 월10,000원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회 500,000원 - 냉난방비: 연2회차등지원 20인이하 50,000원 21~39인 100,000원 40인이상 150,000원	- 영아간식비: 1인당 월10,000원 - 냉난방비: 연2회 차등지원 20인이하 50,000원 21~39인 100,000원 40인이상 150,000원
송파구		- 영아간식비:민간,가정 1인당 월20,000원
양천구	- 소독방제비: 구립 1개소당 4회 50,000원 - 교재교구비: 구립 차등지원 연 784,000~2,442,000원 - 영아간식비: 구립 1인당 월16,380원 - 실내공기질관리비: 구립(430㎡이상) 연1회 1,430,000원 - 장애아통합보조교사인건비: 1인당 1개반 500,000원 - 2009 평가인증통과시설지원 40인 이상 연1회 1,000,000원 21~39인 연1회 700,000원 20인이하 연1회 500,000원	- 영아 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16,380원 - 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비: 민간,가정 1개소당 월100,000원 - 냉난방비:민간가정 40인이상 3회 100,000원 39인이상 3회 70,000원 20인이상 3회 50,000원 - 보육종사자연수 - 장애아통합보조교사인건비: 1인당 1개반 500,000원 - 2009 평가인증통과시설지원 40인 이상 연1회 1,000,000원 21~39인 연1회 700,000원 20인이하 연1회 500,000원

영등포구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600,000원	- 영아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15,000원 - 냉난방비: 민간가정 연2회 200,000원
용산구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000,000원	- 냉난방비: 민간가정부모협동 40인이상 1개소당 연4회 200,000원 20인이상 40인미만 1개소당 연4회 150,000원, 20인이하 1개소당 연4회 100,000원 - 영아 간식비: 민간,가정,부모협동 영아 1인당 1일 1,000원
은평구	- 영아간식비: 구립 1인당 월10,000원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1회 연1000,000원 - 어린이집운영지원: 1개소당 월160,000원 - 평가인증시설지원금: 연1회 39인이하 700,000원 40인이상 1,000,000원	- 영아간식비: 민간,가정 1인당 월10,000원 - 평가인증시설지원금: 연1회 39인이하 700,000원 40인이상 1,000,000원 - 냉난방비 지원(연5회) :가정 100,000원, 49인 이하 민간 150,000원, 50인 이상 민간 -200,000
종로구	- 영아간식비: 구립,법인 1인당 월10,000원 - 난방비: 구립,법인 60인미만 1인당 연200,000원 60인이상 1인당 연300,000원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800,000원	- 영아간식비: 법인외,민간,가정 1인당 월10,000원 - 난방비: 법인외민간 60인미만 1인당 연200,000원 60인이상 1인당 연300,000원 가정 1인당 연100,000원
중 구	-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2회 1,600,000원	- 냉난방비: 40인이상 1개소당 월5회 150,000원 40인미만 1개소당 월5회 100,000원 가정 1개소당 월5회 50,000원 - 영유아간식비: 1인당 월 10,000원
중랑구	- 보육시설운영지원: 난방비 연300,000~900,000원 - 교재교구비:1개소당 연800,000원	- 보육시설운영: 난방비 연300,000~900,000원 평가인증통과시설 연1,000,000원

자료: 2009년도 서울특별시 특수시책사업 현황

기능보강비 지원은 신축 및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으나 2009년도 신축비가 계획되어 있는 구는 성동구의 1개 보육시설 신축 계획만이 있을 뿐이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환경개선비로는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식기세척기 및 청정살균기 구매 지원 등이다.

[표 2-28]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2009)

자치구	정부 인건비지원	정부 인건비미지원
강북구	- 어린이집환경개선: 1개소당 연2,500,000원	
강남구		- 보육시설환경개선비: 민간,가정,직장, 시설별 차등지원 연4,000,000~7,000,000원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 보육시설환경개선: 시설당 차등지원 연5,000,000~50,000,000원 - 평가인증보육시설현대화 기자재비: 1개소당 연1회 800,000원	- 평가인증보육시설현대화 기자재비: 1개소당 연1회 800,000원
금천구	-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금: 연1회 시설장 500,000원 보육교사200,000원	-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금: 연1회 시설장 500,000원 보육교사200,000원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 보육시설개보수: 개보수비 1개소당 연75,000,000원 실시설계비 1개소당 연5,000,000원	
서대문구	- 보육기자재 현대화: 1개소당 연1회 2,000,000원 - 보육시설소규모보수비: 1개소당 연2,000,000원	
서초구		- 보육시설서비스수준향상(개보수): 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4,782,608원
성동구	- 급일어린이집신축: 연1회 320,000,000원 - 보육시설개보수: 1개소당 연29,000,000원 - 식기세척기,공기청정살균기구매: 식기세척기 구입 연1회 1,250,000원 공기청정살균기 1개소당 연1회 500,000원	- 식기세척기,공기 청정살균기구매: 식기세척기 민간 연1회 1,250,000원 가정 연1회 450,000원 공기청정살균기 1개소당 연1회 500,000원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 어린이집환경개선: 1개소당 연2,000,000원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 어린이집환경개선: 17개(30,000,000원)	
종로구		
중 구		
중랑구	- 보육시설친환경리모델링: 105,000,000원	

자료: 2009년도 서울특별시 특수시책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을 제외한 기타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육현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송년행사 지원 등이다. 또한 구에 따라 장난감대여은행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서울특별시의 안심보육모니터링단 활동 실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표 2-29]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기타 특수시책 지원 현황(2009)

자치구	사업명
종로구	- 재롱잔치비: 1개소당 연1회 100,000원 - 어린이날 원아격려: 구립,법인,법인의외,민간,가정 1인당 연1회 5000원 - 스승의날 종사자 격려:구립,법인,법인의외,민간,가정 1인당 연1회 10,000원
중 구	- 재롱잔치: 연1회 구립 250,000원 민간 200,000원 - 어린이날 행사: 1식 40,000,000원 - 보육교사체육대회: 1인당 연1회 4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 송년행사: 1식 8,000,000원 - 특수보육(장애통합시설)시설지원: 영유아수따라 차등지원 100,000~300,000원
용산구	-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개최비: 연1회 20,000,000원
성동구	- 보육시설관련행사: - 암벽등반 연1회 4,680,000원 기념행사 연1회 12,540,000원 - 표창 연1회 1,200,000원 -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운영,환경개선비등 연1회 68,377,000원 - 보육정보센터운영: 인건,운영비등 연1회 220,167,000원 - 보육관련 일반운영비: - 안내리플렛 1회 2,700,000원 구립어린이집운영 연1회 18,000,000원 - 환경개선비 1회 5,220,000원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연1회 6,720,000원 보육차량승차보호기설치 연1회 2,700,000원
광진구	- 구립어린이집경영평가시상: 1개소당 연1회 1,000,000원 -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 1개소당 연1회 146,840,000원 - 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1인당 연4회 70,000원 - 어린이집큰잔치: 구립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25,000,000원 - 어린이집시설장연수: 구립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19,400,000원 - 어린이집평가보고회: 구립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7,200,000원 - 어린이집 교육및행사지원: 구립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12,900,000원 - 안심모니터링운영비:1인당 월50,000원

동대문구	- 출산지원금: 둘째 300,000원 셋째이상 500,000원 -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건립: 1개소 연1회 335,567,000원
중랑구	- 민간행사보조: 어린이집 꿈나무운동회 연1회 25,000,000원 - 연말보육인행사연 연1회 7,000,000원 보육종사자국내연수 연1회 25,000,000원 보육시설해외연수 연1회 24,000,000원 - 구청직장보육시설운영: 인건,보육,중식비등 255,450,000원 임대료 32,040,000원 - 우수보육종사자표창: 1인당 연1회 7,500원 - 안심보육모니터링단활동실비: 1인당 1일 30,000원 - 출산양육지원: 둘째아 이상 1,000,000,000원 - 장난감대여은행운영비: 운영비 연1회 200,000,000원
성북구	- 보육시설연합회체육대회 행사비: 행사규모별차등지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보육영유아한마음체육대회:1개소당 연3회 9,000,000원
은평구	- 직장내보육시설운영: 은평구직장어린이집 연1회 88,983,000원
서대문구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1인당 1일 3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위탁교육: 연4회 2,50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행사지원: 연1회 12,000,000원 - 보육영유아행사지원: 연1회 15,000,000원 - 보육교사교육비: 연2회 2,500,000원 - 보육영유아문화행사: 연2회 15,000,000원 - 민간보육시설연합회사무원인건비: 1인당 월500,000원
마포구	- 보육시설종사자전문교육: 시설장,보육교사 연1회 3,000,000원 - 자기개발교육비: 1인당 200,000원한도내지원 - 보육시설프로그램개발: 1개소당 연1회 200,000원 - 보육교사해외연수:1인당 연1회 600,000원 - 어린이날행사지원: 1개소당 연1회 198,863원 - 장난감대여점설치운영: 연1회 사무관리비 18,000,000원 공공운영비 7,000,000원 - 시책업무추진비: 연1회 3,020,000원 - 우수보육시설지원금:1개소당 연1회 1,500,000원 - 직장보육시설위탁: 1개소당 연1회 90,951,250원
양천구	- 명절휴가비: 1인당 연2회 100,000원 - 어린이집 한마음대잔치: 구립,민간,가정 1개소당 연1회 82,063원 - 출산장려금지원: 둘째아100,000원, 셋째아300,000원, 넷째아500,000원, 다섯째이후1,000,000원
강서구	
구로구	- 보육시설행사비: 연합회별 연10,000,000원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1인당 일15회 35,000원

금천구	- 보육시설행사지원 (보육교사연수): 연1회 20,000,000원 - 직장보육시설운영: 연1회 146,429,000원 - 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연1회 263,444,000원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여비: 1인당 일8회 20,000원 - 보육전문가 활동여비: 1인당 일44회 20,000원 - 장난감나라 운영: 1개소당 연1회 43,813,500원
영등포구	- 어린이날한마당잔치: 연합회별 연1회 5,000,000원 - 보육시설우수종사자워크숍: 1인당 연1회 1,000,000원 - 보육관련교육(종사자 및 학부모): 사업계획따라차등지원
동작구	- 조부모등 보육료지원: 10,800,000원 - 종사자해외 보육시설 비교시찰: 비용의70% - 어린이집 가족한마음대회: 연1회 15,000,000원 - 종사자 체육대회: 연1회 10,000,000원
관악구	- 보육인의날 기념행사: 13,500,000원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0,050,000원 - 보육시설공연문화한마당: 22,80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워크숍: 16,200,000원 - 출산양육지원: 둘째아 이상 390,000,000원 - 보육시설안심보육모니터링: 연1회 4,200,000원 - 보육시설어린이한마음 큰잔치: 24,000,000원 - 보육료 지원모바일안내 서비스: 연1회 5,040,000원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26,960,000원
서초구	- 꿈나무튼튼한마당 큰잔치개최: 1인당 연1회 5000원 - 보육시설우수 종사자표창: 1인당 연1회 1,000,000원 - 보육시설종사자연수: 1인당 연1회 155,333원
강남구	- 구립보육시설교사자녀 보육료지원: 보육료의50% - 시간연장 운영비: 1개소당 연1회 700,000원 - 민간보육교사자녀보육료: 보육료의50% - 재롱잔치등 행사비: 연2회 10,000,000원
송파구	- 영양사인건비: 장애아아토피통합3개시설 영양사인건비50% - 관리비: 구립행복한어린이집 월1,000,000원 - 간호사인건비: 장애아아토피통합1개시설 간호사인건비100% - 급식비지원: 장애아아토피통합시설 1인당 월20,000원
강동구	

자료: 2009년도 서울특별시 특수시책사업 현황

라.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서울특별시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보육·안심보육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사업을 2009년도부터 추진했다. 즉, 서울형 어

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사업의 주요전략은 민간보육시설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보육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공인과정,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기 위한 핵심 사항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지표’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39인이하 시설 대상 지표는 5개 분야 71개 항목이며, 40인이상 시설 대상 지표는 5개분야 92개 항목이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39인이하 시설 60개항목, 40인 이상 시설 80개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30]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기준

분야	항목	평가기준	현장평가	비고
기본요건	80	○ 보육환경, 보육과정 등 7개 영역 80항목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상인 시설	자치구	39인 이하시설 60개 항목
맞춤보육	1	○ 맞춤형 보육 실시 또는 가능 시설	자치구	
안심보육	5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 조리실 및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 공개 ● 1시설 1병원(의원) 주치의 지정	실사단 실사단 실사단 실사단	
클린운영	4	○ 1시설 1계좌 운영 시설 ○ 보육료 및 기타경비 계좌입금 여부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실사단 실사단 실사단	40인 이상
보육인력의 전문성	2	○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비율 ●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실사단	

1) 정부평가인증 통과시설은 80개 항목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 표시 항목은 사후 충족 요건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인 취소

공인절차는 신청(시설장),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현장확인(실사단), 공인심의(위원회), 공인부여(시장)로 진행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결정을 받은 시설의 시설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공인시설 정보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한다. 이후 공인시설은 공인증명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부착하게 된다.

2)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안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린운동을 전제로 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는 구단위 맞춤보육 수급관리에 참여하며 관할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보육 등 맞춤(취약)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실시간 보육정보 조회, 맞춤보육 one-stop 서비스 구현에 참여한다.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참여는 첫째,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며, 둘째, 어린이집 주치의제 실시에도 참여하게 된다. 셋째로는 시설 및 차량운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넷째로는 급식 안전관리, 다섯째,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수, 여섯째, 보육교사 자율장학에 참여한다. 자율장학은 각 구별 자율장학그룹 결성하게 되며 시설별 연 1회 공개수업 실시는 필수, 참여는 자율로 진행되며 공개수업의 계획-준비-실행-평가에 대하여 멘토가 진행된다. 보육시설클린운동은 회계관리 계좌의 단일화, 회계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의미한다.

3)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지원조건은 첫째,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넷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1]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

민간시설	①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시설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정원 20인 이하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시설 제외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영아반 2개이상의 보육시설에 한함)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기준 적용(다만, 기능보장비는 제외) *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현원 기준)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특별시에서 정함. * 예 : '09년 영유아 1인 평균보육료 : 272,200원
공 통	① 도우미 지원 <보육도우미> - 지 원 액 : 월 80만원(퇴직적립금, 4대보험 별도지원) - 지원조건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중 정원 40인 이상 시설 <급식도우미> - 지원조건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중 40인 미만 시설 - 지원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연계 지원 ② CC-TV설치비 지원 - 시설장, 교사, 학부모 합의하에 CC-TV 설치시 설치비 50% 지원 ③ 급식 조리기구(오븐)지원 - 100인 미만 시설 : 가정용 오븐기 구입비용 80% (시설당 최대 40만원) - 100명 이상 시설 : 단체급식용 오븐기 구입비용 90%(시설당 최대 900만원)

4)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함께 상실된다. 공인시설은 매년 1회 자체 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2009년도 사업실적

2009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실적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 625개소(31.25%), 민간보육시설 1,374개소(68.75%)로 총 2,000개소가 참여하였다. 이들 중 실사단의 현장확인을 통과하여 공인된 보육시설은 1차 통과 793개소, 2차 통과 61개소로 총 854개 보육시설이 2009년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다.

제 4 절 연구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가.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

국내의 이주민 관련 연구는 크게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별 실태를 인권차원에서 다룬 연구(설동훈 외, 2002; 유명기, 1995; Kevin Gray, 2004 등)와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연구(석현오 외, 1998),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실태와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장혜경 외, 2003; 김정원 외, 2005, 설동훈 외, 2003, 조혜영 외 2007; 배은주, 2006; 조영달 외, 2006) 등이 있다.

나. 이주노동자 자녀 연구

우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개인에 관한 연구에서 점차 이주노동자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가족문제, 자녀문제, 교육과 복지 문제 등으로 연구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는 현재 학계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인권 및 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설동훈, 2003; 홍진주, 2004; 김보미, 2007)와 교육실태 및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조영달 외, 2006; 김정원 외, 2006; 오성배, 2006; 배은주, 2006)로 나눌 수 있다. 설동훈 등(2003)은 이주노동자 아동과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인권실태를 분석하여 외국인 노동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낮은 학업성취, 교우관계의 어려움,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조영달 외, 2006)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를 각각 ‘뒤쳐지는 아이들, 방치되는 아이들, 탈락하는 아이들’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중

도탈락, 집단따돌림 등의 교육 소외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성배(2006)는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교육적 어려움을 통해 교육 기회의 보상적 배분을 통한 격차 해소와 다문화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정원(2006)은 이주 자녀들이 학교 입학이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취학 후 제도적 지원 부재와 차별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배은주(2006)는 이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피부색과 저개발국 출신에 따른 차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이 어렵고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보미(2006)와 홍진주(2003)는 이주 자녀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을 연구하여 가족의 지지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새로운 문화와 사회 적응의 스트레스는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이주 아동의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 국제결혼 가정 관련 연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결혼이주자 여성의 문화차이와 적응 실태를 다룬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들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여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한국염, 2004; 김상임, 2004; 양정화, 2004; 양혜우, 2005)나 결혼이주의 과정과 경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문화차이와 갈등, 가정폭력문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설동훈, 윤홍식, 2005), 이들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문화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기선, 2007, 설동훈 외, 2005, 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

오늘날 한국사회는 결혼 이민자의 유입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민 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외, 2009).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 적응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주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 문화차이, 언어문제 등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 정책적 개선을 위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된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주 여성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피해자로서 다루었다는 비판과 이주 여성의 삶의 주체성과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설동훈 외, 2005)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 여성의 주체적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주 여성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주체적인 삶의 적응을 돕는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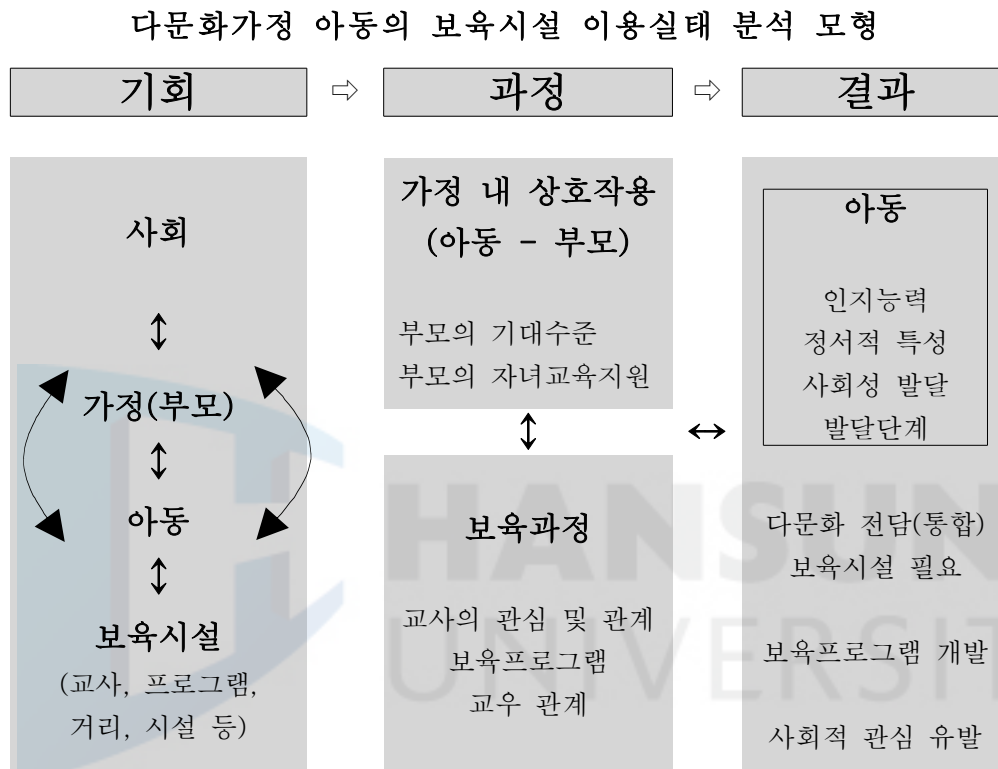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연구의 주요동향은 자녀교육에 관한 것이었다(조영달, 2006; 오성배, 2006; 금명자 외, 2006; 이창호 외 2007; 조혜영 외, 2007).

조영달 등(2006)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이 심각하고,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자녀들은 학교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배(2005)는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코시안 아동들이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를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이해력과 작문 실력이 다소 떨어지고, 정체성과 혼란, 소극적인 대인관계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일반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창호, 오성배 외, 2007). 송선진(2007)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외모의 차이가 뚜렷할수록,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연구분석 틀 설정

수집된 자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설이용기회, 보육과정, 결과(종합)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기회 및 과정 측면에서 보육시설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8]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 분석 모형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 이용 기회의 측면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 교사, 프로그램, 시설, 거리, 비용 등의 투입변인 혹은 교육 여건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시설선택동기, 그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및 배려, 학부모의 물리적·경제적 환경 및 사회적요구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과 보육시설, 사회라는 집단차원에서 아동의 보육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변인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지원이나 학부모의 교육기대,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형태 등이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에 포함되었다.

과정의 측면은 가정 내 상호작용의 차원과 보육시설 내의 아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관련된 변인들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정 내 상호작용으로 부모의 교육기대와 자녀교육지원,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보육시설 내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아동에 대한 관심, 부모-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간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 종합에서는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측면, 과정의 측면, 혹은 이 둘의 영향관계에 의한 산출된 결과로서 아동의 인지능력과 정서적 특성을 의미하며 아동의 사회성발달 또는 적절한 발달단계에 맞게 성장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다문화 전담 또는 통합 보육시설의 설치·지원, 다문화관련 보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본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및 범위

다문화가정 아동의 (민간)보육시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1월2일부터 22일까지 약 20여 일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10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13부가 회수되어 총 회수율은 21.3%이다. 그리고 학부모 설문지는 총 회수율이 201부로 집계되었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및 우편조사,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현지 방문조사의 경우 월레이사회와 월레회를 통해 배부 회수 하였고, 이메일 및 우편은 서울시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협

조를 얻어 사무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의 분석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17.0(한글판)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2. 연구 도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분석의 모형을 [표 3-1]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시설이용자용과 운영자용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설문지 자료 수집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한 조사분야는 시설운영자용에서는 3개 영역으로 교사의 인식, 교육의 실제,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8개항의 내용을, 시설이용자용 설문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교사·어린이집과의 관계, 이주자의 적응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13개항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1] 시설운영자용 코딩 코드

교사의 인식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 필요성(유/무) •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 지도에 대한 인식(부담 유/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지	• 유아 특성 : 요구 파악 - 역사교육시 배려, 유아특성(언어, 지적능력, 적응능력 등) • 학부모 가정에 대한 인지
교육의 실제	교육내용	• 구체적인 내용(특별/일반)
	교육방법	• 교수법 실제 : 구체적 내용
	교육연계	• 학부모의 자녀 관심정도(소극적, 적극적) - 학교·지역사회연계
교사의 요구	연수	구체적인 내용
	정보공유	찬성(학습자료/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반대
	프로그램 개발, 방법	구체적인 내용

[표 3-2] 학부모용 코딩 코드

자녀와의 관계	학습지도	• 가르침 • 가르치지 못함(언어적인 어려움, 내용이 어려움, 남편이 지도함, 기타)
	교육을 위한 정보습득 내용·방법	
	자녀 적응에 대한 걱정	• 걱정됨 • 걱정안됨 • 해당없음
		• 어머니(이유) • 그 외
교사 · 학교와의 관계	교류정도	• 교류하고 있음 (행사 참여도) • 교류없음[기회가 없음, 아이가 문제가 없음, 어머니의 형편이 안됨(시간, 어린아이)]
	교사에 대한 인식	• 신뢰함 • 중립 • 불신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만족도	• 만족함 • 불만족함 • 관심없음
이주자의 적응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 밝혀져도 상관없다 •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
	다문화교육	• 교육정보습득경로 • 프로그램 참여 여부 • 다문화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요구
	남편과의 관계	•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친구관계	• 한국친구 있음 • 자국친구만 있음
	직업	• 직업희망 여부 •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 • 직업에 대한 정보 경로
	언어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표 3-3] 설문조사 분석틀

	설문문항 요소	설문지(문항)
조사 대상자의 배경 정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이용자(32~37)
	학부모 연령 분포	시설이용자(42)
	학부모 출신국	시설이용자(43)
	자녀수	시설이용자(44)
	종교	시설이용자(45)
	국내 거주기간	시설이용자(46)
	학부모 학력	시설이용자(47)
	결혼 이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정도	시설이용자(48)
시설 이용 기회 측면	보육시설 이용이유	시설이용자(13)
	유아교육기관의 분류 인식정도	시설이용자(14,15)
	현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시설이용자(16)
	학부모가 경험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시설이용자(17~20)
	외국인 부모의 친한 친구유무 및 고민상담 대상	시설이용자(21,22)
	자녀교육 정보의 필요성 및 습득방법	시설이용자(23,24)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시설이용자(25,26)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노출에 관한 학부모 의견	시설이용자(27~31)
	월평균소득, 월평균 지출 교육비, 교육비의 가계 부담정도	시설이용자(38,39)
보육 과정의 측면	교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시설운영자(17~20)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시간과 교사 연수의 도움 정도	시설운영자(7~9)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소 경험 경험과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도 경험	시설운영자(10~14)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태도	시설운영자(10~14)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시설운영자(21~27)
	다문화교육을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시설운영자(15)
	다문화교육 연수 시 알고 싶은 사항	시설운영자(16)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시설운영자(29,30)
	근무처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정도	시설운영자(31)
	교사가 보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자녀생활 관심도	시설운영자(28)

보육 과정 의 측면	가족 중 주요 대화자(복수응답)와 대화내용	
	가정 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아버지, 어머니의 출신국, 부모의 한국어 능력정도에 따른 가족 간의 상호작용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상의 정도 및 의사결정자	이용자 32,37
	가정에서 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어린이집 생활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교육내용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정보교류	이용자 6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외국에 대한 정보 및 문화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무	이용자 27,28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걱정유무 및 걱정하는 이유	이용자 29,30
	학부모 활동 참여여부	
	학부모대상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관련 사항	
	교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생활 관심도	
	아동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교사 평정	
	아동성격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평정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회수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SPSS 17.0(한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통계기법은 도수분포표의 산술 및 변수값을 이루는 분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자녀와의 관계, 시설과의 관계, 보육프로그램과의 관계 등이 시설의 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상관관계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조사대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동거가족, 형제(자매)유무 등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학부모의 연령, 국적, 국내거주기간, 학력, 종교,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맡고 있는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자녀수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이상	합계
빈도(%)	88(43.8)	72(35.8)	39(19.4)	2(1.0)	201(100)

[표4-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자녀는 1명인 경우가 응답자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명은 35.5%, 3명은 19.4%, 4명 이상은 1%이었다. [표4-2]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가정에서 77.6%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17.9%)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였다.

[표 4-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언어	한국어	외국어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합계
빈도(%)	156(77.6)	9(4.5)	36(17.9)	201(100)

학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36~50세가 전체 51.2%를, 어머니의 경우는 26~40세 사이가 8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참조)

[표 4-3] 학부모 연령 분포

아버지	빈도(%)	어머니	빈도(%)
30세 이하	3(1.5)	25세 이하	21(10.4)
31~35세	27(13.4)	26~30세	54(26.9)
36~40세	103(51.2)	31~35세	56(27.9)
41~45세	59(29.4)	36~40세	63(31.3)
46~50세	8(4.0)	41~45세	2(1.0)
51세 이상	1(0.5)	미응답	5(2.5)
합계	201(100)	합계	201(100)

학부모의 출신국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버지 응답자의 95.5%는 출신국이 한국이었으며, 4.5%만이 출신국이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가 1.5%였으며, 나머지 98.5%는 외국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응답자의 3.0%가 중국, 각 1%로 일본과 필리핀 출신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응답자의 29.9%가 필리핀, 27.9%가 중국, 22.9%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출신국에 관한 통계자료와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표 4-4] 학부모 출신국

출신국가명	아버지	어머니
한국	192(95.5)	3(1.5)
일본	1(0.5)	18(9.0)
중국	6(3.0)	56(27.9)
필리핀	1(0.5)	60(29.9)
베트남	-	46(22.9)
그 외	1(0.5)	18(9.0)
합계	201	201

학부모의 학력은 [표 4-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25.1%), 중학교 졸업(14.7%), 대학원 이상(6.3%), 초등학교 졸업 이하(4.7%) 순이었다. 어머니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5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33.0%), 중학교 졸업(7.0%), 초등학교 졸업 이하(1.5%), 대학원 이상(0.5%) 순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5] 학부모 학력

학력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이하	9(4.7)	3(1.5)
중학교 졸업	28(14.7)	14(7.0)
고등학교 졸업	94(49.2)	116(58.0)
대학교 졸업	48(25.1)	66(33.0)
대학원 이상	12(6.3)	1(0.5)
합계	191(100)	200(100)

교사의 경우 대다수가 여교사가 절대수치로 나타나 99.1%였으며 남교사는 0.9%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49.3%는 시설장 이었으며 이어 43.2%가 보육교사였다. ([표 4-6] 참조)

[표 4-6] 교사의 성별 분포 및 직위

성별	빈도	직위	빈도
남자	2(0.9)	대표자	5(2.3)
		시설장	105(49.3)
여자	211(99.1)	보육교사	92(43.2)
		기타	11(5.2)
합계	213(100)	합계	213(100)

교사의 연령은 25세 미만부터 50세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보육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7] 교사의 연령별 및 교직경력별 분포

연령	빈도(%)	보육경력	빈도(%)
25세 미만	24(11.3)	5년 미만	48(22.5)
25세 이상~30세 미만	25(11.7)	5년 이상~10년 미만	84(39.4)
30세 이상~35세 미만	38(17.8)	10년 이상~20년 미만	46(21.6)
35세 이상~40세 미만	28(13.1)	20년 이상~30년 미만	9(4.2)
40세 이상~45세 미만	25(11.7)	30년 이상~35년 미만	12(5.6)
45세 이상~50세 미만	36(16.9)	35년 이상	14(6.6)
50세 이상~55세 미만	15(7.0)		
55세 이상	22(10.3)		
합계	213(100)	합계	213(100)

제 2 절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

다문화가정에서 학부모가 처해 있는 현실과 이 가정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환경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와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 관련 사항,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 연수를 포함한 경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용자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지원 현황 중 경제적 여건 파악을 위해,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부담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월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았고, 월100~150만원, 월151~200만원인 경우가 각 20.7%와 20.2%로, 월201~250만원은 13.1%, 월251~300만원이 11.1%, 300만원 이상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음을 의미하는 0원과 무응답도 몇 가정 있었으나 이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표4-8]참조) 가정의 자녀 보육비용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가 어떠한 간에 학부모 응답자의 88.9%는 자녀 보육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8] 월평균소득, 보육비용의 가계 부담정도

월평균소득	빈도(%)	자녀 보육비용의 가계 부담정도	빈도(%)
월100만원 이하	53(26.8)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22(11.1)
월101~150만원	41(20.7)	조금 부담이 된다	73(36.7)
월151~200만원	40(20.2)	다소 부담이 된다	58(29.1)
월201~250만원	26(13.1)	매우 부담이 된다	46(23.1)
월251~300만원	22(11.1)		
월300만원 이상	16(8.1)		
합계	198(100)	합계	199(100)

다음으로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 외국인 부모가 자신의 나라 말이나 문화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4-9]와 같이 82.0%의 학부모는 ‘부모 나라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6.0%), ‘아무래도 괜찮다’(12.0%)고 응답한 학부모는 합하여 18% 정도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9]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노출에 관한 학부모 의견

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나 문화교육에 관한 생각	빈도(%)	다문화가정 노출에 대한 생각	빈도(%)
외국인 부모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164(82.0)	자랑스럽다	80(39.8)
외국인 부모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12(6.0)	그저 그렇다	103(51.2)
아무래도 괜찮다	24(12.0)	드러내고 싶지 않다	16(8.0)
		기타	2(1.0)
합계	200(100)	합계	201(100)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39.8%는 ‘자랑스럽다’고 하였으나, 절반 이상인 51.2%의 학부모가 ‘그저 그렇다’, 8.0%의 학부모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도 1%가 있었다. 학부모 면담과정에서도 설문결과와 비슷한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혹시라도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또래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많이 염려하는 편이었다. 특히 어머니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한국 사회 또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머니의 한국사회 적응여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외에 실제 학부모가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0]과 같이 학부모의 절반 정도(56.7%)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주로 선생님(39.2%)이나, 친구(19.2%)의 권유, 그리고 스스로(19.2%)의 필요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심층면담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보를 이웃이나,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 이주여성센터나 상담소와 같은 기관 혹은 어린이집에서 보내 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얻는다고 한다.

[표 4-10] 학부모가 경험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석여부	빈도(%)	프로그램 주관기관	빈도(%)	프로그램 참여동기*	빈도(%)
예	114(56.7)	어린이집	27(23.7)	이웃 권유	10(8.3)
		사회단체	35(30.7)	친구 권유	23(19.2)
		관공서	8(7.0)	선생님권유	47(39.2)
		종교시설	28(24.6)	스스로	23(19.2)
아니오	87(43.3)	기타	16(14.0)	기타	17(14.2)
합계	201(100)	합계	114(100)	합계	120(100)

*복수응답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우리교육에 관한 이해는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의 사회적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친구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이들 부모들이 교육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 알고 지내는 한국인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에 대해, 79.1%의 학부모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민을 상담

하는 상대로는 49.3%가 ‘가족’이라고 하였고, 46.3%는 ‘같은 나라 친구’라고 응답하였으며, 22.9%는 이웃이나 한국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는다고 하였다. 실제 학부모 면담에서는 같은 나라 친구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일이나 의논할 일이 생길 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표 4-11]참조).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문화가정 부모(특히 어머니)의 대부분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민을 상담하는 상대로는 가족과 ‘같은 나라 친구’들이 있었으며, ‘가족’과도 상담이 어려운 고민일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상담(5.2%)과, 상담자가 없다고 응답(4.0) 등 낮은 분포를 보인 응답에 관해서도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외국인 부모의 친한 친구유무 및 고민상담 대상

친한 친구 유무	빈도(%)	상담자*	빈도(%)
예	151(79.1)	같은나라 친구	93(46.3)
		이웃, 한국친구	46(22.9)
		가족	90(49.3)
		기관이나 단체	11(5.5)
아니오	42(20.9)	없다	8(4.0)
		기타	8(4.0)
합계	201(100)	합계	265(131.8)

* 복수응답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88.5%) 자녀교육이나 어린이집 입소선택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52.5%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수단으로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들었으며, 학부모의 25.5%는 이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고, 22.5%의 학부모는 다른 다문화가정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표 4-12

참조).

다른 연구자료(이재분(2008) 다문화가정 교육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정보 습득에 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 살면서 매스컴이나 주변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영어유치원 등)에 관해 막연하게나마 자녀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좀 더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다른 한국의 일반 어머니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경우가 적고,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먼저 결혼하여 이주해 온 같은 나라 출신의 선배 어머니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접하기도 힘들다.

[표 4-12] 자녀교육 정보의 필요성 및 습득방법

정보의 필요성	빈도(%)	정보습득 방법*	빈도(%)
예	177(88.5)	TV나 신문 등 매스컴	105(52.5)
		이웃	51(25.5)
아니오	7(3.5)	다른 다문화가정	45(22.5)
		사회단체	21(10.5)
잘 모르겠다	16(8.0)	기타	21(10.5)
		얻지 못하고 있다	15(7.5)
합계	200(100)	합계	258(100)

* 복수응답

또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34.8%의 학부모가 ‘생활정보’라고 응답하였고, 26.4%는 ‘한글습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4%는 ‘취업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로서는 ‘자녀교육에 관한 교육’, ‘부모교육’, ‘건강 관련 교육’, ‘취미생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현재 학부모들이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단지 11.9%의 학부모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6.8%의 학부모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6.3%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다(표 4-13]참조).

[표 4-13]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의견*	빈도(%)	정보제공의 만족도	빈도(%)
생활정보	70(34.8)	충분하다	24(11.9)
한글습득	53(26.4)	보통이다	94(46.8)
취업관련	51(25.4)	부족하다	73(36.3)
한국문화	48(23.9)	모르겠다	10(5.0)
기타	15(7.5)		
합계	237(117.9)	합계	201(100)

* 복수응답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시설이용자(학부모)들은 자녀를 양육,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위해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학부모들이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이용한 보육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아울러 향후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지원 시, 학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지도로부터 부모교육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시설운영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보육하고, 학급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에 관한 지식, 이해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과 관련 연수와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나 시설장 등이 이에 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 즉, 교사는 ‘유아들이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지’, ‘아동이 다인종,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유아들이 다인종,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교사는 ‘교육내용(교재, 학습자료 등)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 자신은 ‘다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표 4-14]와 같다.

우선 ‘영유아가 자기 민족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78.4%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는 아이들이 다인종·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88.2%의 교사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이 역시 거의 모든 교사가 다인종·다문화에 편견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교육내용(교재, 학습자료 등)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도 85.4%의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다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20.6%의 교사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통이다(40.8)를 포함하여 절반 정도만이 다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교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교사는 영유아가 자기 민족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1(0.5)	6(2.8)	39(18.3)	56(26.3)	111(52.1)	213(100)
교사는 아이들이 다인종, 다양한 문화를 편견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0.5)	1(0.5)	23(10.8)	32(15.0)	156(73.2)	213(100)
교사는 교육내용(교재, 학습자료 등)에 존 재하는 문화적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5)	7(3.3)	23(10.8)	52(24.4)	130(61.0)	213(100)
나는 다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1(0.5)	79(37.1)	87(40.8)	32(15.0)	14(6.6)	213(100)

이를 통해 교사들은 문화적 차이에 관한 수용성, 다양성의 인정 등을 위
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도, 교사 자신의 다문화
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교사들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
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매일 지도하는 유아들 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에게 시설 내 다문화가정
아동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내 다문화가정 아동
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77.8%), 2명인 경우는 17.9%로 그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1~2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 두 명의 아동을 위해 관련 연수를 받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게 이전에 다문화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69%)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수
를 받은 바가 없으며, 전체 응답자의 31%인 66명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연수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연수를 받은 대부
분의 교사들은 1~3시간 연수(62.1%) 혹은 4~6시간 연수(24.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짧은 시간의 연수였지만, 대부분의 연수를 받은 교
사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표 4-15] 참조).

[표 4-15]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시간과 교사연수의 도움 정도

다문화교육 연수시간	빈도(%)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도움정도	빈도(%)
1시간 ~ 3시간	41(62.1)	매우 도움이 되었다	7(10.6)
4시간 ~ 6시간	16(24.2)	도움이 되었다	41(62.1)
7시간 이상	9(13.6)	보통이다	16(24.2)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0)
합계	66(100)	합계	66(100)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한 시설장들과의 면담에서도 교사연수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면담 시설장의 1/3이 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연수 주관기관은 보수교육, 세미나, 연합회, 대학 등이었다. 다문화 교육연수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총12명 중 7명,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3명,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이 2명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시설에서 다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연수도 거의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이전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보육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 [표 4-16]에서와 같이 응답교사의 32.9%의 교사들만이 ‘이전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보육해 보았다’고 하였고 나머지 67.1%의 교사들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외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특별히 지도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경험한 바 없다(84.5%)’고 하였으며, 단지 응답자의 15.5% 만이 ‘특별지도를 해봤다’고 응답하였다.

[표 4-16]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경험 및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도 경험

	보육 경험	지도 경험
있다	70(32.9)	33(15.5)
없다	143(67.1)	180(84.5)
합계	213(100)	213(100)

다음으로는 현재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증가에 따른 교사의 부담’과 ‘시대변화에 따른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표 4-17]참조).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어나면서 보육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는지’에 대해, 응답 교사의 46.5%는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교사는 아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84.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교육에 다문화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3.2%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많아지면 업무량도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63.9%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가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증가하게 되면 보육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부담과 사전 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7]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태도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어나면서 보육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다	8(3.8)	48(22.5)	58(27.2)	66(31.0)	33(15.5)	213(100)
교사는 아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1(0.5)	5(2.3)	27(12.7)	85(39.9)	95(44.6)	213(100)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2(0.9)	28(13.1)	91(42.7)	46(21.6)	46(21.6)	213(100)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교사의 업무는 증가하게 된다.	1(0.5)	26(12.2)	50(23.5)	78(36.6)	58(27.2)	213(100)

실제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거나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들에게 그들의 다문화적 효능감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 ‘다양한 민족 집단의 아이들간에 상호존중심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등을 물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다.

[표 4-18]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5)	21(9.9)	54(25.4)	94(44.1)	43(20.2)	213(100)
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아이들간에 상호 존중심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5)	22(10.3)	71(33.3)	70(32.9)	49(23.0)	213(100)
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 할 수 있다	1(0.5)	21(9.9)	45(21.1)	98(46.0)	48(22.5)	213(100)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64.1%의 교사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의 아이들간에 상호존중심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55.9%의 교사가 ‘그렇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68.5%의 교사가 ‘그렇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인정·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비교적 높은 다문화적 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해 질문을 하였다. [표 4-19]에 의하면, 32.9%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8.2%의 교사들이 ‘사회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

고 하였고, 18.8%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16.0%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6.1%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계 필요성’,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교육 필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 필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의 부모참여 기회 확대 필요’ 등이 제안되었다.

[표 4-19] 다문화교육을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빈도(%)
사회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60(28.2)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40(18.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13(6.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70(32.9)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4(16.0)
기타	9(4.2)
합 계	226(106.1)

* 복수응답

앞으로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을 경우, 30.0%의 교사가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방법’을 가장 배우고 싶어 했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방법’(28.6%)에 대해,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27.2%)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이어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실태와 문제’(12.7%), ‘다문화교육 정책’(6.6%)에 관한 내용은 다른 항목에 비해 관심도가 조금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에 비해 아직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 또한 자치 정책입안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4-20]참조).

[표 4-20] 다문화교육 연수 시 알고 싶은 사항*

	빈도(%)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	58(27.2)
다문화교육 정책	14(6.6)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방법	64(30.0)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실태와 문제	27(12.7)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방법	61(28.6)
기타	1(0.5)
합 계	226(105.6)

* 복수응답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중 중요하게 거론되는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 혹은 교수법의 공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현장 교사의 82.6%는 ‘공유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또한 75.6%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표 4-21] 참조).

[표 4-21]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이나 자료에 관한 정보 혹은 교수법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1(0.5)	8(3.8)	28(13.1)	89(41.8)	87(40.8)	213(100)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0.9)	13(6.1)	37(17.4)	79(37.1)	82(38.5)	213(100)

실제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현재 다문화교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7.5%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31.1%는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48.6%의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교사의 32.0%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어린이집의 충분한 지원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표 4-22]참조). 하지만 민간운영 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아동대비 많은 많은 숫자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은 조금 버거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표 4-22] 어린이집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정도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우리원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6(2.8)	62(29.2)	41(19.3)	66(31.1)	37(17.5)	212(100)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나 시설장 뿐만 아니라, 시설의 대표자 등의 관심이나 인식, 태도, 열정 역시 중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어린이집생활 관심정도에 대해 교사들에게 질문하였다. [표 4-23]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21.3%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며, 24.9%는 ‘그렇다’라고 하여 전체 46.2%가 학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데 동의하였다. 반면 35.5%의 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23] 교사가 보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자녀생활 관심도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관심이 많다	19 (11.2)	41(24.3)	31(18.3)	42(24.9)	36(21.3)	169(100)

제 3 절 보육 과정의 측면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 및 보육을 위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지원 실태와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아동관계 및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보육 과정의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3절에서는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및 지원, 보육환경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부부의 상호작용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교육 등과 같은 어린이집 제공프로그램의 실태와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교사-학부모 관계 등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차원

가정에서의 아동이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 관심정도 및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매일 등원시키는지’,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하는지’, ‘어린이집 일과에 대해 확인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자녀를 항상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7.6%가 ‘그렇다’고 하였고, 4.0%만이 매일이 아닌 필요할 때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는 73.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자녀와의 대화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14.5%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머니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또는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일과에 대해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5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절반정도의 학부모만이 하루 일과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의 일과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학부모 면담에서 알아본 결과,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이를 하원 시킬 때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일일 대화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

[표 4-24] 가정에서의 보육지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 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자녀를 항상 어린이집에 등원시킨다	138 (68.7)	38(18.9)	17(8.5)	4(2.0)	4(2.0)	201(100)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58(28.9)	90(44.8)	24(11.9)	16(8.0)	13(6.5)	201(100)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에 대해 확인한다	53(26.4)	59(29.4)	50(24.9)	6(3.0)	33 (16.4)	201(100)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상의하는지 물음으로써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부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35.6%의 학부모는 ‘자주 상의한다’고 하였으며, 55.0%는 ‘가끔 상의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90.6%)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25] 참조).

[표 4-25]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상의정도 및 의사결정자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부부간 상의 정도	빈도(%)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자	빈도(%)
자주 상의한다	68(35.6)	아버지	71(36.6)
가끔 상의한다	105(55.0)	어머니	106(54.6)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18(9.4)	할머니나 할아버지	3(1.5)
		기타	14(7.2)
합계	191(100)	합계	194(100)

또한 자녀 훈육이나 교육비용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가정 내 의사결정은 어머니가 54.6%, 아버지가 36.6%로, 어머니가 결정하는 경우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참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면담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외의 교육 즉, 방문교육이나 문화센터 등에 관련된 사교육에 관한 결정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내리거나 아버지와 상의는 하지만 결정은 어머니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때문이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지출을 하기 원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2. 어린이집차원

지금까지는 유아의 성공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아동관계 및 또래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 과정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교사와 어느 정도 정보를 교류하는지 살펴본 결과, 29.9%정도의 학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대해 교사와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8.8%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4-26] 참조)

[표 4-26]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정보교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 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교사와 정보를 교류한다.	12(6.0)	48(23.9)	63(31.3)	42 (20.9)	36 (17.9)	201(100)

어린이집 보육 및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교사 간 관계,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천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사를 하였다.

먼저, ‘자녀가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좋은지’를 학부모에게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의 학부모는(64.7%)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32.3%는 ‘보통’이라고 했고, 3%의 학부모들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생님은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61.7%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8.2%의 학부모는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이상의 부모가 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7%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지’에 대해 45.8%의 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자녀에게 관심이 많고, 어린이집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교사들의 자녀 지도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어린이집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에 있어서는 다른 응답들보다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어린이집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7]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 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선생님은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	36(17.9)	88(43.8)	42(20.9)	31 (15.4)	4(2.0)	201(100)
어린이집의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한다	38(18.9)	79(39.3)	54(26.9)	24 (11.9)	6(3.0)	201(100)
선생님은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48(23.9)	82(40.8)	51(25.4)	18(9.0)	2(1.0)	201(100)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18(9.0)	74(36.8)	43(21.4)	50 (24.9)	16(8.0)	201(100)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외국에 관한 정보 및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지’ 묻은 결과, 28.9%의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친다고 응답했으며, 21.9%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49.3%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4-28]참조).

또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 질문한 결과, [표 4-28]과 같이 46.8%의 학부모들은 ‘제공한다’고 응답하였고, 21.4%의 학부모들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31.8%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절반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8] 어린이집에서 외국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유무

외국에 관한 교육 유무	빈도(%)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무	빈도(%)
다른 나라에 관해 가르친다	58(28.9)	예	94(46.8)
다른 나라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다	44(21.9)	아니오	43(21.4)
모르겠다	99(49.3)	잘 모르겠다	64(31.8)
합계	201(100)	합계	201(100)

학부모들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곤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역시 이에 관해 걱정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표 4-29]참조). 즉,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지 부모에게 묻은 결과, 36.8%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나, 59.2%의 학부모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 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과반수 52.7%의 학부모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라서’라고 응답하였고, 30.8%의 학부모들은 ‘아이의 성격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하였다. 13.4%의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습이 더더서’ 친구들 사이에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기타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가 간 관계 때문에’ 등의 이유로 걱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9]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걱정유무 및 걱정하는 이유

걱정유무	빈도	걱정하는 이유*	빈도
예	74(36.8)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106(52.7)
		외모때문에	22(10.9)
아니오	119(59.2)	학습이 더더서	27(13.4)
		아이의 성격 때문에	62(30.8)
잘 모르겠다	8(4.0)	기타	24(11.9)
합계	201(100)	합계	241(119.9)

* 복수응답

제 4 절 종합과 시사점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

1)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학부모들의 우리사회 적응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입소했을 때, 혹시라도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 등을 당할까봐 많이 염려하는 편이었다. 특히 어머니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한국 사회 또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2) 학부모를 위한 대응방안 필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민을 상담하는 상대로는 49.3%가 ‘가족’이라고 하였고, 46.3%는 ‘같은 나라 친구’라고 응답하였으며, 22.9%는 이웃이나 한국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는다고 하였다. 실제 학부모 면담에서는 같은 나라 친구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일이나 의논할 일이 생길 때 서로 이야기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고민을 상담할 만한 친한 친구가 주위에 없는 경우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상담(5.5%) 또는 상담자가 없다고 한 응답(4.0%) 등에 관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보육정보 습득의 어려움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의 양육지도부터 부모교육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모 자신의 한국사회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이용한 보육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4)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 필요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교사들이 처한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예컨대 매일 보육하는 아동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조사대상 교사들에게 어린이집내 다문화가정 아동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원내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77.8%), 2명인 경우는 17.9%로 그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의 교사는 원에서 1~2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 두 명의 유아를 위해 관련 연수를 받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게 이전에 다문화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69.0%)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은 바가 없으며, 전체 응답자의 31.0%인 66명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연수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1~3시간 연수(62.1%) 혹은 4~6시간 연수(24.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짧은 시간의 연수였지만, 연수를 받은 교사 대부분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5) 다문화교육을 위한 개선 사항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 개발’(32.9%), ‘사회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28.2%),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18.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16.0%),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6.1%)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계 필요성’, ‘일반 아동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교육 필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 필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의 부모참여 기회 확대 필요’ 등이 제안되었다.

2. 보육 과정의 측면

1)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대부분의 학부모들은(90.6%)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있었으며, 자녀 훈육이나 교육비용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어머니가 54.6%, 아버지가 36.6%로, 어머니의 결정권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학부모 면담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외의 교육 즉, 방문교육이나 문화센터 등에 관련된 사교육에 관한 결정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내리거나 아버지와 상의는 하지만 결정은 어머니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때문이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지출을 하기 원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2) 학부모-교사와의 관계 :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 마련 필요

29.9%정도의 학부모만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교사와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의 보육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3) 학부모-어린이집과의 관계 : 어린이집 홍보 필요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외국에 관한 정보 및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지’를 물은 결과, 49.3%의 학부모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21.4%의 학부모들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31.8%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잘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설이용 기회의 측면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지도부터 부모

교육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부모 자신의 한국사회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의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둘째, 보육과정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참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아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과의 상호 연계를 활성화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부모와 교사간의 정보교류 실태를 보면, 다문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며, 교사와의 정보교류도 적은 편이었다. 주요 이유가 부모의 언어상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보이며 이 점을 고려해 교사나 보육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및 학부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은 ‘문화적 차이에 관한 수용성’, ‘다양성의 인정’ 등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의 경험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수 증가로 인한 수업지도상의 어려움 발생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있다고 응답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원생 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교사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갖추게 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보수교육 등의 기회를 이용해 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다문화 관련 교육 자료 부족 및 교사간, 지역간 상호 정보공유 부재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많은 교사들은 심적·물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할 때의 어려움이나, 영유아 중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 또는 역사적 내용을 가르칠 때 일본이나 중국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반에 있는 경우 등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의 경우 나름대로 좋은 지도전략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이유로, 처음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담당하게 되거나 새로운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자료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야만 한다. 기존에 이미 개발 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과 교수학습 전략이나 생활·보육지도 자료들이 공유된다면 교사들의 심적·물적 부담감은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문화 관련 모든 보육 및 정보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자료나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우리사회의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점진적 변화에 대비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며,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생태학적 발달 모형에 기초한 다문화교육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외국인노동자와 농촌남성들과의 결혼을 위해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였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이주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 흐름의 성격 또한 서구의 이주 역사와는 다르다. 서구의 경우가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이주민 집단촌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민속문화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온 이주의 과정을 지닌다면,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대부분은 개별 이주의 형태로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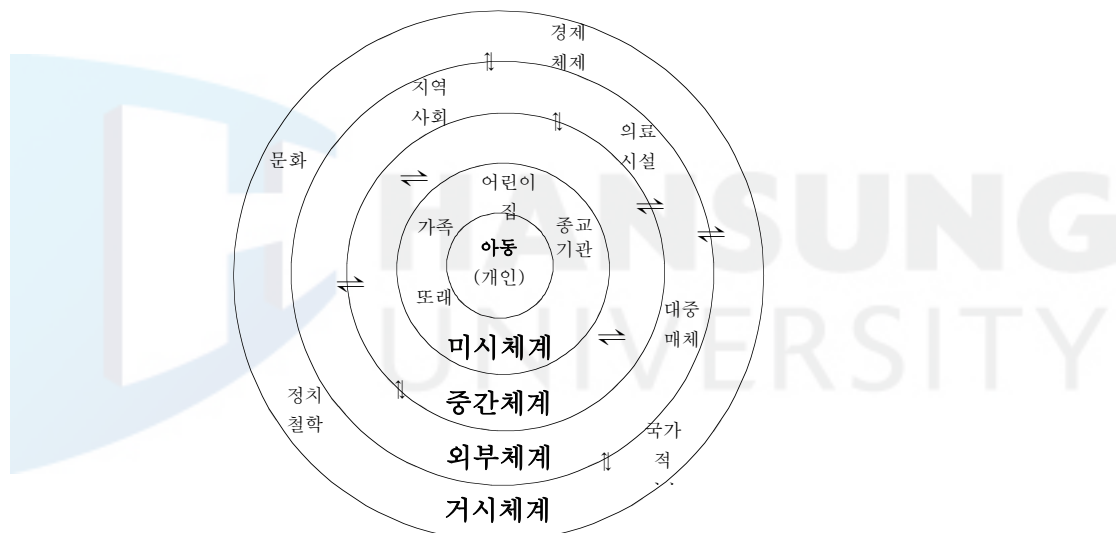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선진 외국에서 보여주는 공통사례위에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를 고려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국사회 이해교육’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이 이주민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일방주의 교육이다. 이런 시혜적이고 일회성의 행사 중심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 더 광의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와 함께 이주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으로부터 모든 이의 다문화이해 및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종국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는 기관 중심의 보육과정만을 다루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육대상인 아동과 이를 둘러싼 생

태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 보육시설, 지역사회, 국가 전 체제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라이프사이클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심리학자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가 제안한 바이오생태학적 인간발달 모델(bioecological model)¹⁴⁾은 미래 다문화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Bronfenbrenner, 1989).

다음 [그림 5-1]에서와 같이 인간 개인의 발달은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어린이집에서의 여러 활동 등과 같이 아동 개인의 발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미시체계)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법, 문화 등의 더 큰 사회적 맥락(거시체계)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그림 5-1] 브론펜브레너의 바이오생태학적 인간발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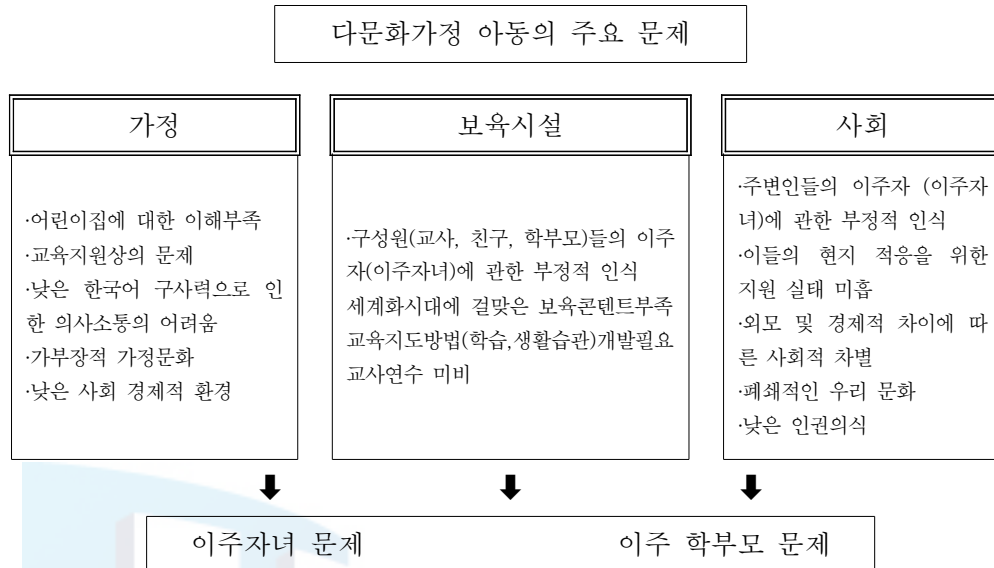


출처: K.S.Berger(2004). The developing person through the life span. New York. Worth, p3. (본문에 맞게 재구성)

14) 브론펜브레너는 인간발달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바이오생태학적 인간발달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는 모델을 통해 인간 개인(아동)의 발달과 연관된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가족, 친구, 교사 등), 중간체계(mesosystem: 미시체계 모든 요소들간의 상호작용: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 가족-교사 상호작용 등), 외부체계(exosystem: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지역사회자원, 부모의 직업 등), 거시체계(macrosystem: 법, 관습, 가치관)로 구분하여 인간발달이 이들 체계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끌어짐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생태학적 발달모형 개념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림 5-2]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요 문제



[그림 5-2]는 기존 선행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요 문제점, 어려움을 정리해 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요 문제점들은 어느 한 요소에 기인하기보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생태학적 환경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보육 및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경쟁적 자본주의, 단일민족적 배타성, 가부장적인 문화, 분단 이데올로기와 같은 우리사회의 가치나 태도, 신념, 사회구조(거시체계)로부터 국가 수준의 다문화보육 정책의 철학적, 사회적 기반을 도출할 수 있으

며, 이주민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이로 인한 사회 및 생활부적응 등(외부체계)으로부터 다문화보육 및 정책의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대부분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편견 없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다문화보육 및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다문화보육은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아닌 사회적 동화가 가능한 보편적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둘째, 이주민가정 대상의 한국사회 적응교육(소수자 적응을 위한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인식(다수자 인식전환)을 바꾸기 위한을 통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셋째, 반편견·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주민의 언어를 존중할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주자가 출신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할 경우, 그들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 2 절 정책과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주요 문제점을 기초로, 향후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구(조직) 설치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해 여러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주관 부처가 없이 다문화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할은 여성부에서, 어린이집 보육 대상인 아동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

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로 각기 나뉘어져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출발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는 등 부처 내에서도 서로 업무를 중복, 분산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문화정책을 내놓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추진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외국 이주자를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2. 예산확충(사회적응 프로그램 확대)

또한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국 땅의 사회적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편견과 이해부족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양함의 조화에 이르기에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문화와 경제적 지원 등이 편견보다 더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손꼽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008년에는 28억, 올해는 48억으로 증액했다. 이처럼 사회통합에 정부차원에서도 힘을 쏟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족 형성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결혼중개업 관리법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남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국적 취득까지 4년 동안 자신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장치가 부족해 생활 속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정부는 부처 간 행정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체류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제고

외국인 부녀자나 아동을 걸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와 관용에서 벗어나 다양함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면 아무리 잘 만든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아마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현실적 문제점 극복에 가장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순혈주의의 획일성이 새 것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없다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국제시민의 마인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4.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양성

연구결과에서처럼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모든 것을 일선 교사들이 직접 채워가야 하는 상황이나, 교사들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김이선 외, 2007). 다문화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보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전담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적응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이해, 소수자 배려, 관련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역시 필요하다.

5. 정보전달 체계 개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보육정보의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의 학습지도와 보육시설 선택을 위해, 그리고 부모 자신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학부모들은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학

부모들을 위한 보육정보 제작 및 제공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다문화가정아동 전문시설 설치

보육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는 국공립·민간(법인,직장,부모협동 포함)·가정 보육시설로 운영형태와 인가인원에 따라 구분되고 있고 또한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24시간보육, 친환경인증, 서울형, 평가인증지정 등 특수형태의 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시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해서도 다문화가정전담시설이나 통합보육인증 시설의 도입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8 교육통계
- 교육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란(2006).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 김보미(2007).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원(200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혁(200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효섭(2006).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본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가능성 :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중심으로. 제7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자료집.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 설동훈·박경태·이관주(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엄한진(2007),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동북아시아 위원회 용역과제 07-7, 한국사회학회.
- 우희숙(2008).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과 학습태도의 의미 이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원(2006), 다문화가정지원 우수사례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인정·최해경(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 이재분(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 전경숙 외(2007).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전홍주·배소영·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충옥 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양서원.
- 통계청 <http://kostat.go.kr/>
- 통계청·KOSIS(2008), 연령별추계인구.
- 행정안전부(2009), 2009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자치행정과.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정미(2007),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 Berger.K.S.(2004), *The developing person through the life span*. New
York: Worth.
- Gray.K.(2004), *The 'Underclas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아세아연구. 47(2). pp97~291.

시설이용자용 설문지

* 귀 닥 자녀에 대한 사항입니다.

_____ 어린이집, _____세반, 이름 _____, 성별(남, 여)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주낙운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들의 교육 일반에 관한 부모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귀 닥은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요

2.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할머니 ④ 친척
⑤ 기타

<답하는 요령>

만약 ‘아이는 어린이집에 꼭 다녀야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표 하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꼭 다녀야한다.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자녀를 항상 어린이집에 등원 시킨다.					
4.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 이다.					
5.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일과 에 대해 확인한다.					
6.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에 대해 교사와 정보를 교류 한다.					
7. 선생님은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					
8.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와 사이 가 좋다					
9. 어린이집의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한다.					
10. 선생님은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11.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에 대 해 아이가 잘 알고 있다.					
12.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13.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_____ ②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_____
- ③ 아이의 교육을 위해_____ ④ 나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_____
-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14. 유아교육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 등등 다양함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자세히 알고 있다_____ ② 조금 알고 있다_____ ③ 모른다_____

15.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① 구분할 수 있다_____ ② 조금 알고 있다_____ ③ 모른다_____

16. 현재의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가까워서_____ ② 보육료가 저렴해서_____
- ③ 시설이 좋아서_____ ④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_____
- ⑤ 교사들이 좋아서_____ ⑥ 주위의 추천으로_____
- ⑦ 다른 시설에 입소하기위해 잠시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_____
- ⑧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17.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수업, 야외현장학습참관 등 학부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한다_____ ② 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이 반기지 않을까봐 못한다____
- ③ 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____ ④ 하고 싶지 않다____

1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17번으로 가세요)

19.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한 교육프로그램 이었나요?

- ① 어린이집_____ ② 사회단체_____ ③ 관공서_____
- ④ 종교시설_____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20.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 ① 이웃의 권유로_____ ② 친구의 권유로_____ ③ 선생님의 권유로_____
④ 스스로_____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21. 어머니는 지금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22. 어려움(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나요?

- ① 같은나라 친구_____ ② 이웃, 한국친구_____ ③ 가족_____
④ 기관이나 단체(예:상담소, 교육기관)_____ ⑤ 없다_____
⑥ 기타_____

23. 필요한 정보(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어린이집 입소선택을 위한 정보)
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① TV나 신문 등 매스컴_____ ② 이웃_____ ③ 다문 다문화가정_____
④ 사회단체_____ ⑤ 기타_____ ⑥ 얻지 못하고 있다_____

24.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③ 잘 모르겠다_____

25. 현재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한 정보나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충분하다_____ ② 보통이다_____ ③ 부족하다_____
④ 모르겠다_____

26.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정보)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관련_____ ② 한글습득_____ ③ 한국문화_____
④ 생활정보_____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27.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다른 나라에 관해 가르치고 있나요?

- ① 그렇다_____ ② 그렇지 않다_____ ③ 모르겠다_____

28.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③ 잘 모르겠다_____

29.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까?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③ 잘 모르겠다_____

30. 자녀가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다문화가정의 아이라서_____ ② 외모 때문에_____
③ 학습이 더더서_____ ④ 아이의 성격 때문에_____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31. 어머니(혹은 아버지)께서는 다문화가정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자랑스럽다_____ ② 그저 그렇다_____
③ 드러내고 싶지 않다_____ ④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32.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상의하시나요?

- ① 자주 상의한다_____ ② 가끔 상의한다_____ ③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_____

33. 가정에서 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_____ ② 어머니_____ ③ 할아버지나 할머니_____
④ 형제자매_____ ⑤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34. 자녀와의 대화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 ① 친구_____ ② 어린이집 생활_____ ③ 선생님_____
④ 기타(그 외)_____

35. 집에서 가족들과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나요?

- ① 한국어_____ ② 외국어_____ ③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_____

36. 자녀에게 어머니(혹은 아버지) 나라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③ 아무래도 괜찮다_____

37. 자녀훈육이나 사교육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하
십니까?

- ① 아버지_____ ② 어머니_____ ③ 할머니나 할아버지_____
④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_____

38.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월100만원 이하_____ ② 월100~150만원_____ ③ 월 150~200만원_____
④ 월200~250만원_____ ⑤ 월250~300만원_____ ⑥ 월 300만원 이상_____

39.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_____ ② 조금 부담이 된다_____
③ 다소 부담이 된다_____ ④ 매우 부담이 된다_____

※ 다음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부모님의 한국 나이는?

① 아버지_____세 ② 어머니_____세

41. 부모님의 국적은?

① 아버지_____ ② 어머니_____

42. 자녀는 몇 명입니까?_____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43. 부모님의 종교는?

① 아버지_____ ② 어머니_____

44. 부모님의 한국 거주 기간은?

① 아버지_____ ② 어머니_____

45.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상자속의 번호를 쓰시오)

아버지_____ 어머니_____

-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

46. 어머니(혹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합니까?(상자속의 번호를 쓰시오)_____

- | | | |
|------|------|------|
| ① 잘함 | ② 보통 | ③ 못함 |
|------|------|------|

시설운영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주낙운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정아동의 보육시설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들의 교육 일반에 관한 시설운영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다음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_____ 여_____

2. 연령 : _____세

3. 경력(2009년 10월 현재 기준) : _____년 _____월

4. 직위 : ① 대표자_____ ② 시설장_____ ③ 보육교사_____
④ 기타_____

5. 인가인원 : ① 20인 이상_____ ② 39인 이하_____
③ 40인 이상_____ ④ 100인 이상_____

6. 어린이집 내 다문화(국제결혼·새터민·외국인)가정 아동 수 : _____명

7. 선생님은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또는 시설장)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없다’의 경우 10번으로 가세요)

8.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총 _____ 시간

9.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또는 시설장) 연수가 영유아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_____ ② 도움이 되었다_____ ③ 보통이다_____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_____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_____

10. 이전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11. 선생님은 어린이집 수업 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특별지도(방문지도 등)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없다’의 경우 15번으로 가세요)

12. 특별지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① 한국어_____ ② 한국문화_____ ③ 특기적성_____
④ 기타_____

13.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_____
②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다_____
③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_____
④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_____

14. 특별지도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_____
- ②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_____
- ③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_____
- ④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 개발_____
- 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_____
- ⑥ 기타_____

16.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_____
- ② 다문화교육 정책_____
- ③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방법_____
- ④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실태와 문제_____
- ⑤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방법_____
- ⑥ 기타_____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 교사는 영유아가 자기 민족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18. 교사는 아이들이 다인종, 다양한 문화를 편견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9. 교사는 교육내용(교재, 학습 자료 등)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 나는 다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21.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어나면서 보육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다.					
22. 교사는 아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23.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24.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교사의 업무는 증가하게 된다.					
25. 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6. 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아이들간의 상호존중심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27. 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28. 내가 맡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다.					
29.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이나 자료에 관한 정보 혹은 교수법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30.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1. 우리원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32.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하여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ABSTRACT

A Study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Private Child-care Centers in Seoul-

Joo, Nak-W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Recently, most existing research or policies limitedly define multicultural family a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oreign worker family, or North Korean refugee residents. The limitation of this existing research is its failure to appreciate fully and reflect the actual needs of the recipients of the policies. This is mainly because the researchers ignore the diversity of motivation for immigration, backgrounds, and problems among these families. Therefore, there is an immediate ne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subcategor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The presented study aims to understand better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ivate child-care centers in Seoul.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tudy, this research will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creating new

policies that effectively support the childcare of these children.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Childcare of Korea

In the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childcare in Korea, the researchers reviewed immigration history and trends in Korea an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childcare. This research could identify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multicultural childcare as follows:

1) The society needs to overcome the close-mindedness as an ethnic homogenous country and build a multicultural coexisting community that allows immigrants to share a common sense of belonging.

2) The society needs to resolve the human rights conflicts that immigrants experience during immigration process and help them restore/re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3) The isolate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used at (childcare) centers for the cultural adaptation and adjustment of minority children should be discarded.

4) The society needs to respect the childcare rights of these families who desire to keep their cultural identities and native languages.

5)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m with language education for better social adjustment.

6) Teachers need professional development to raise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opulation.

7) Additional fundamental studies need to exa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number and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region. The data compiled from these studies will aid in budget planning.

8) More specific and practical plans for multicultural childcare are required. Some examples include increased support for families, expanded experimental schools, and campaigns and public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current childcare status of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1) The Aspects of Educational Opportunity

(1) Mother's adaptation into the society is critical for the educational support of the children.

(2) The parents who do not have close friends and cannot talk with family members need some help to get advice when they are in trouble.

(3) They encounter difficulties with gathering information about parenting.

(4) The teachers who hav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their classes do not understand the cultural diversity or have appropriate professional development.

(5) Most of the teachers appear to be overwhelmed with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and understand that preparatory training is needed.

(6) Teachers believe numerous issues need immediate improvemen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2) The Aspects of Childcare Processes

(1) Mothers tend to make decisions about a child's education.

(2) The children are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in general. However,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or the degree of perceived personal attention and care from the teachers appear to vary among group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mothers and whether teachers received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r not.

(3) Efforts for better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 sharing are needed.